

2022-2024년, 다시함께상담센터 활동 중심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판례집

2022-2024년, 다시함께상담센터 활동 중심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판례집

2022-2024년, 다시함께상담센터 활동 중심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판례집

판례집을 펴내며

2003년 9월 1일 다시함께상담센터 개소 이후, 센터는 성착취 구조에 대한 저항과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성착취 없는 여성 존엄이 실현되는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과 시민과 함께 연대해 왔습니다.

이번 <2022-2024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판례집>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센터와 함께해온 수많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착취와 폭력 속에서도 인간 존엄이 훼손된 성착취 피해임을 드러내며, 자신의 경험을 용기 있게 말하고 각종 소송과 투쟁을 통해 생존해 왔습니다.

각 사례는 한 사람의 고통을 넘어 성착취 구조의 문제를 사회와 사법체계 앞에 드러낸 중요한 기록이자, 오늘의 판례를 가능하게 한 소중한 증언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진실을 말해 주신 모든 여성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네 번째 판례집(2022-2024년)에서는 센터에서 진행한 다양한 소송 사건을 다루며, 성매수 단독 범죄와 그로부터 파생된 여러 범죄 유형을 폭넓게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매매 환경이 얼마나 착취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성매매 여성의 법적 취약성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는 2022-2024년 3년간 총 87건의 소송을 지원하였으며, 이 가운데 의미 있는 판례 68건을 선별하여 범죄 유형별로 분류하고 판례집에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제별 이해를 돕기 위해 센터 법률지원단의 판례 분석 의견도 함께 수록하여, 판례를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판례집을 펴내며, 제작 과정에서 귀중한 고견을 나눠주신 문혜정·박숙란·박혜원 변호사님과 서선진 법무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판례집>이 반성매매 활동과 피해자 지원에 힘쓰는 활동가와 법조인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시함께상담센터는 반성매매 활동과 성매매피해자 지원의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2025. 12.

여성과 함께, 시민과 함께

다시함께상담센터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판례집

목 차

I

성매매와 법률지원

1 성매매로 인한 복합피해와 법률지원의 필요성	7
2 성매매 법률지원의 유형	10
3 센터 법률지원 현황 [2022-2024년 판결 실적 기준]	12

II-1

형사 - 아동·청소년

1 성매수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37
2 관련 법률	39
3 판례분석	48

II-2

형사 - 성인

1 성매매 상황 속 형사사건	91
2 관련 법률	93
3 판례분석	103
1) 기소	103
2) 피소	134

III

민사

1 성매매 상황 속 민사사건	147
2 관련 법률	149
3 판례분석	154
1) 제소	154
2) 피소	164

IV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1 성매매 상황 속에서의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173
2 관련 법률	175
3 기본개념과 절차	178
1) 파산 및 면책	178
2) 개인회생	180
3) 기타 기억할 만한 절차	182
4 관련 사례	184

2022-2024년, 다시함께상담센터 활동 중심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판례집

I

성매매와 법률지원

1 성매매로 인한 복합피해와 법률지원의 필요성	7
2 성매매 법률지원의 유형	10
3 센터 법률지원 현황 [2022-2024년 판결 실적 기준]	12

I 성매매와 법률지원



1 성매매로 인한 복합피해와 법률지원의 필요성

성매매 피해와 법률지원의 현황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 동안, 총 988명의 성매매 경험 여성과 만나 총 23,508건의 상담 및 지원을 수행하였다. 이중 법률지원(법률상담·수사지원·소송지원)은 총 270명(전체 내담자의 27%)에게 총 4,606건(전체 지원의 20%)이 진행되었다. 상담팀에서 소송지원으로 법원 판결까지 받은 내담자는 총 87명(전체 법률지원 내담자의 32%)으로 총 2,195건(전체 법률지원의 48%) 지원이 제공되었다.

센터는 성매매 경험 여성에게 심리·정서·의료·법률 등 통합적 지원을 제공한다. 성매매 경험으로 축적된 신체적·정신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동시에, 취약한 법적 지위로 인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법률 문제를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성매매 중단을 위한 안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성매매 피해의 구조적 특성과 법적 어려움

성매매 상황에서 중첩 피해를 경험한 여성들은 당면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하게 법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신속히 해결하고 장기간 누적된 고통을 끝내고자 하는 절박함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이라는 사회적 낙인과 현행법의 한계 속에서, 이들은 자신이 피해자임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실제 수사 및 재판 절차는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고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피해 신고를 했음에도 성매매 행위자로서 별건 입건되거나, 복합피해와 관련된 진술을 여러 차례 반복해야 하는 등 부당한 상황을 겪기도 한다. 그 결과 법적 절차에 대한 트라우마와 낮은 신뢰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크다.

왜 전문적 법률지원이 필요한가

따라서 법률지원 과정에서는 다른 지원보다 더욱 세심하고 전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복잡하게 얽힌 법률 해석과 적용에 따라 각 사건의 진행 방향과 판결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매매 환경과 내담자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적이다.

성매매 환경은 본질적으로 성매매 여성에게 불평등한 권력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업주와 업소 관계자, 알선 브로커는 여성을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며, 성매수자 또한 여성을 통제 가능한 대상으로 여기곤 한다. 이러한 구조적 권력 불균형 속에서 성매매 여성은 폭력과 착취,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위치에 놓인다.

성매매 여성들이 겪는 피해는 단일하지 않다. 성매매 행위 자체뿐 아니라 알선·강요, 강간과 강제추행, 협박·감금, 사기, 스토킹, 불법촬영 및 유포 협박 등 복합적이며 연쇄적인 범죄가 뒤따른다. 나아가 성매매를 전제로 한 금원의 불법 추심 등으로 인해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는 성매매 피해가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구조적 착취와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러나 피해자 다수는 신고조차 하지 못한다. 이는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선,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회적 인식 속에서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닌 '행위자'로 처벌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는다.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거나 가족·지인에게 알려질 것에 대한 불안도 크다. 업주나 알선책의 보복 가능성 또한 현실적 위협이며, 실제로 폭행·협박·불법촬영물 유포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제적으로는 선불금 등 업주에게 진 채무가 있어 법적 대응을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여기에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는 사회적 편견은 피해자의 고통을 축소하고 정당한 피해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이유로 성매매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지원과 심리적 조력의 병행이 필수적이다. 특히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개입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적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법률 절차는 길고 복잡하며, 수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도 존재하기 때문에, 성매매 환경과 사건의 특수성을 전문적으로 이해한 변호인의 조력이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센터의 역할과 법률지원의 가치

센터는 이러한 과정 전반에서 피해자의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로 존재해야 한다. 사건의 단계마다 의미와 방향을 피해자와 함께 확인하며, 긴 시간 이어지는 법적 절차 속에서도 지지치 않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 변호인은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와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도록 돕고, 사건의 특성과 피해자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나아가 법률지원은 개별 사건 해결을 넘어, 피해 경험을 구조적 착취와 사회적 불평등의 맥락 속에서 재조명하는 과정으로 확장된다. 이는 성매매 구조의 착취성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주체로 서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다. 결국 법률지원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법의 언어로 다시 세상에 드러내는 작업이며, 사회 구조 속에서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해 나가는 의미 있는 여정이다.

축적된 판례의 의미와 앞으로의 연대

지난 3년간 축적된 센터의 판례는 단순한 법적 기록이 아니다. 이는 용기를 내어 센터의 문을 두드린 피해자들에게 작은 희망이자, 지난한 절차를 끝까지 걸어낸 값진 기록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피해자는 센터를 찾고 있으며, 센터는 전문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더욱 견고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모든 여정은 성매매의 착취적 구조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그것은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는 길이자, 가해자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기도 하다.

피해자를 지지하는 진정한 힘은 끊임없는 연대에 있다. 앞으로도 센터는 피해자가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설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지속할 것이다. 이러한 연대의 축적이 언젠가 성 착취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지는 날을 만들어낼 것이라 믿는다. 그날까지 센터의 지원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중심에 법률지원단이 함께할 것이다.

2 성매매 법률지원의 유형

센터의 법률지원은 법률상담 및 자문, 경·검 수사지원, 재판 소송지원 등으로 이루어지며, 소송지원은 크게 형사, 민사, 파산 및 면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형사'는 범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형법 및 특별법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체계이다.
- '민사'는 대등한 개인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소송으로, 주로 피해의 보상이나 대여금의 반환 등 개인의 권리를 위해 제기된다.
- '파산 및 면책'은 채무자 자신의 능력 및 재산으로 채무를 계속적, 일반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지급 불능의 상태임을 재판을 통해 확인하고 채무를 면책받는 과정을 말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형사, 민사, 파산 및 면책의 기본 정의로서 성매매 상황에서 이와 같은 소송이 벌어지는 배경은 아래와 같다.

1) 형사

성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형사사건은 크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 위반에 따른 문제와, 「형법」 등에 규정된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행위자와 성매매 업주 및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 자금, 장소, 건물 등을 제공하는 자 등을 처벌하고 있으므로, 성매매 상황 속 여성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형사 문제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이다.

그 외 형사적 문제는 성매매 상황에서 성매수자에 의해 가해질 수 있는 강간 및 강제추행, 감금, 폭행, 협박 등의 범죄나 성매매 업주 및 사채업자의 횡령, 사기, 공갈, 협박, 감금, 성폭력 범죄나 성매매 여성의 사기(주로 선불금 혹은 취업 사기) 피소 문제 등이 있다,

또한 성매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형사사건 중,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은 성매매처벌법을 위주로 하는 성인과 달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처벌된다. 관련하여 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는 성매수, 성매매 유인 및 알선, 성폭행, 성착취물제작·배포 등이 있다.

2) 민사

성매매와 관련한 민사는 주로 업주나 일수사채업자 등 성매매 산업으로 여성을 착취하는 자들이 성매매피해자를 상대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대여금 청구 소송이 주를 이루고, 그 외 업주 등으로부터 성매매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을 넘겨받은 자들(또는 회사)이 제기하는 양수금 소송이 있다.

한편, 성매매피해자 측에서 먼저 업주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공증서류가 작성되었거나 대여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을 때 제기하는 청구이의 소송 등의 유형이 있다.

그밖에 형사 소송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업주 또는 성매수자 등이 수시로 연락하여 협박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 등을 보내올 때 성매매피해자 측에서 제기하는 접근금지가처분신청 등이 있다.

3) 파산 및 면책

여성을 착취하는 구조의 성매매는 많은 여성을 다양한 빚으로 묶어맨다. 성매매 여성은 선불금 변제 완료 시 채권자와 작성한 차용증이나 공정증서를 회수하지 않은 채, 여러 업소를 이동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후일 채권자들은 성매매 여성의 채무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서류를 빌미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회수되지 않은 채무증빙서류가 있을 시, 성매매 여성은 불법채권추심이나 소송에 휘말릴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

성매매 여성과 얽혀있는 채무로는 업주·일수사채업자·계주·업소관련 물품판매업주의 채무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많은 여성은 선불금 등 업소에 남아있는 채무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런 채무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탈성매매 했던 여성들도 성매매에 재유입이 될 상황이 발생하기에, 성매매 관련 채무의 해결은 탈성매매를 위한 주요한 요인이 된다.

업소 안팎으로 많은 채무가 누적된 경우, 각 채권에 대하여 일일이 대응할 수가 없고, 또 언제 소송이 들어올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경우는 개인파산 및 면책으로 채무 관련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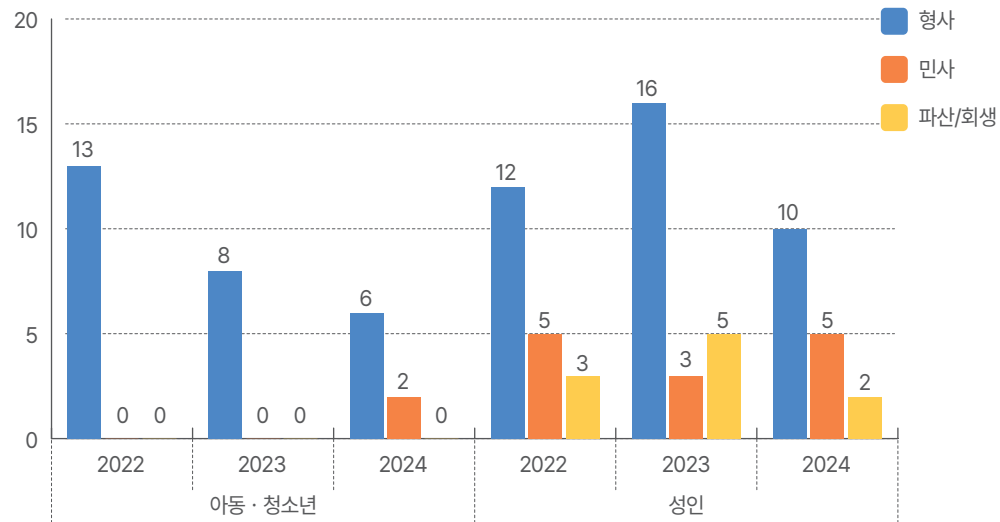
3 센터 법률지원 현황 [2022-2024년 판결 실적 기준]

1) 소송지원 건수 [판결선고연도 기준]

구분	연도	형사	민사	파산/회생	총계
아동·청소년	2022	13	0	0	13
	2023	8	0	0	8
	2024	6	2 ¹⁾	0	8
성인	2022	12	5	3	20
	2023	16	3	5	24
	2024	10	5	2	17
총계		65	15	10	90

지원 연령대별로는, 전체 소송지원 90건 중 '아동·청소년' 사건이 32%(총 29건: 2022년 13건, 2023년 8건, 2024년 8건), '성인' 사건이 68%(총 61건: 2022년 20건, 2023년 24건, 2024년 17건)를 차지하였다.

연령대별 소송 유형을 보면, '아동·청소년' 사건은 성인이 된 이후 진행된 '민사(손해배상)' 2건(7%)을 제외한 27건(93%)이 모두 '형사' 소송지원이었다. 반면, '성인' 사건은 총 61건 중 형사 38건(62%), 민사 13건(21%),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10건(16%)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 연도별 소송지원 건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 동안, 센터 상담팀에서 소송 지원한 총건수는 90건(2022년 33건, 2023년 32건, 2024년 25건)이다.

소송 종류별로 살펴보면, 전체 90건 중 '형사'가 72%인 65건(2022년 25건, 2023년 24건, 2024년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사'는 17%인 15건(2022년 5건, 2023년 3건, 2024년 7건),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은 11%인 10건(2022년 3건, 2023년 5건, 2024년 2건)으로 나타났다.

1) 민사 사건 중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사건은, 원고가 형사사건 당시 청소년이었으며, 성인이 된 후 민사를 진행하였다.

2) 소송지원 세부 실적 [총 9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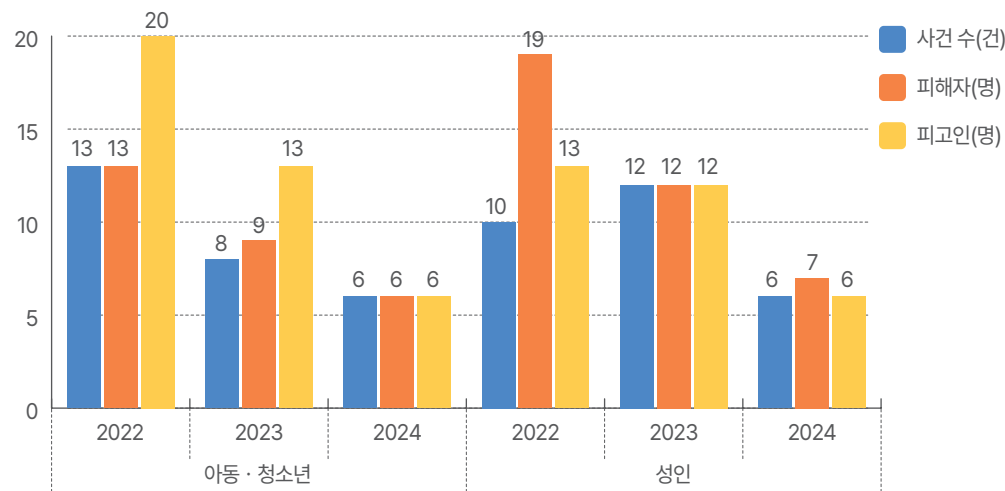
(1) 형사 소송 건수 [총 65건]

전체 소송지원 90건 중 '형사' 소송지원은 총 65건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한다. 이 중 내담자가 피해 신고·고소를 통해 진행된 '기소' 사건은 55건(85%)이며, 내담자가 인지수사나 피고소로 인해 사건에 연루된 '피소' 사건은 10건(15%)이었다.

1-1 기소 [총 55건]

① 기소 사건 수

구분	연도	사건 수(건)	피해자(명) : 내담자	피고인(명)
아동·청소년	2022	13	13	20
	2023	8	9	13
	2024	6	6	6
성인	2022	10	19	13
	2023	12	12	12
	2024	6	7	6
총계		55	66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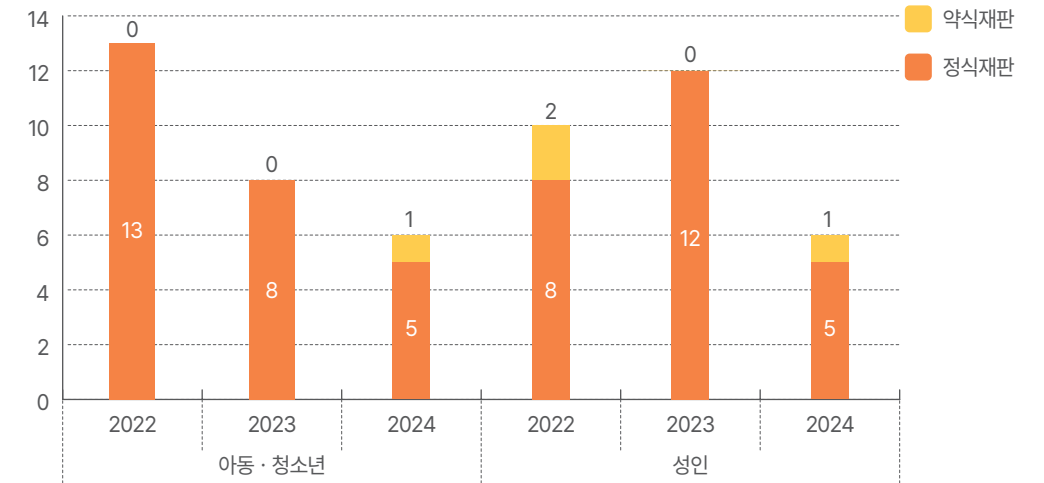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기소 사건 수

센터에서 지원한 '형사 기소' 사건은 총 55건(2022년 23건, 2023년 20건, 2024년 12건)이었다. 이 중 '아동·청소년' 기소 사건은 49%인 27건(2022년 13건, 2023년 8건, 2024년 6건), '성인' 기소 사건은 51%인 28건(2022년 10건, 2023년 12건, 2024년 6건)이었다. 기소 55건에서 피해자(내담자)는 총 66명이며, 피고인은 총 70명이었다.

② 재판 종류

구분	연도	정식재판	약식재판	총계
아동·청소년	2022	13	0	13
	2023	8	0	8
	2024	5	1	6
성인	2022	8	2	10
	2023	12	0	12
	2024	5	1	6
총계		51	4	55



<그림 3> 연도별 재판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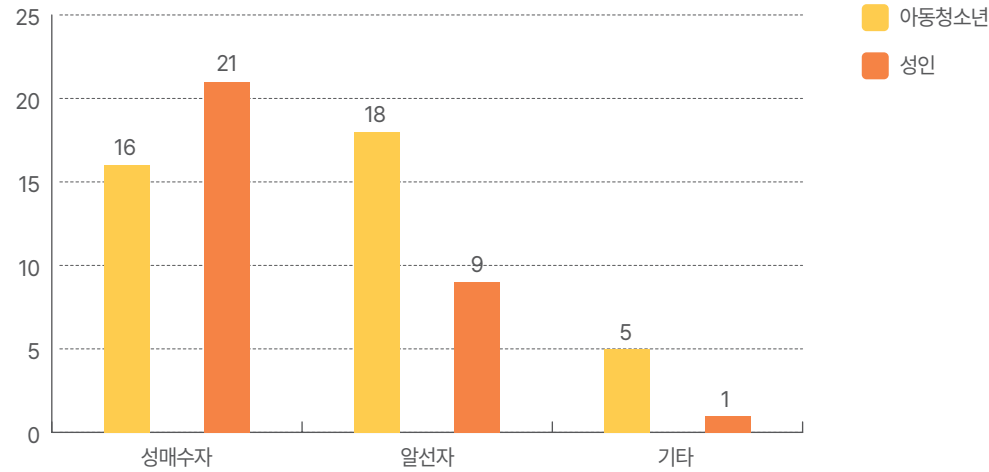
센터가 지원한 형사 기소 사건 55건 중 '정식재판'은 93%인 51건(2022년 21건, 2023년 20건, 2024년 1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약식재판'은 7%인 4건(2022년 2건, 2024년 2건)이었다.

'아동·청소년' 사건 27건 중 정식재판은 96%인 26건(2022년 13건, 2023년 8건, 2024년 5건)이었고, 약식재판은 4%인 1건(2024년 1건)이었다.

'성인' 사건 28건 중 정식재판은 89%인 25건(2022년 8건, 2023년 12건, 2024년 5건)이며, 약식재판은 11%인 3건(2022년 2건, 2024년 1건)으로 확인되었다.

㉔ 피고인 신분

구분	성매수자	알선자	기타	총계
아동·청소년	16	18	5 ²⁾	39
성인	21	9	1 ³⁾	31
총계	37	27	6	70



<그림4> 피해자 연령대별 피고인 신분

센터가 지원한 형사 기소 사건을 분석한 결과, 총 70명의 피고인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의 신분을 살펴보면 성매수자가 37명(53%)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알선자(업주 및 업소 관계자 등)가 27명(38%),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와 지인의 전 애인 등 2차 가해자에 해당하는 기타 유형이 6명(9%)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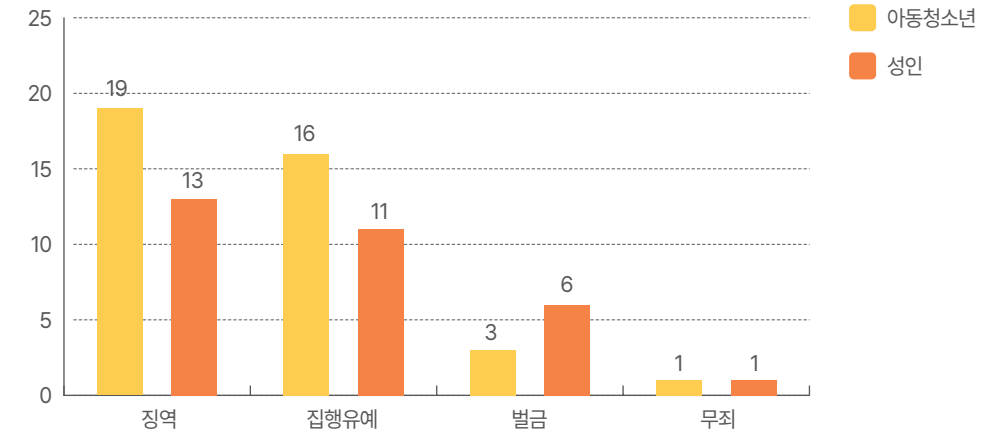
‘아동·청소년’ 피해사건의 피고인은 총 39명으로 전체 피고인의 56%를 차지한다. 이 중 성매수자는 16명(41%), 알선자는 18명(46%), 기타는 5명(13%)으로 나타났다.

한편, ‘성인’ 피해사건의 피고인은 총 31명으로 전체 피고인의 44%이며, 성매수자 21명(68%), 알선자 9명(29%), 기타 1명(3%)으로 확인되었다.

2)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기타 피고인 5명은 모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거나, 이를 이용하여 협박한 2차 가해자(디지털성범죄자)이다.
3) ‘성인’ 피해자의 기타 피고인 1명은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빌미로 명예훼손 및 협박한 ‘지인의 전남자친구’이다.

㉕ 피고인 재판 판결 결과

구분	징역	집행유예	벌금	무죄	총계
아동·청소년	19	16	3	1	39
성인	13	11	6	1	31
총계	32	27	9	2	70



<그림5> 피해자 연령대별 피고인 판결 결과

센터에서 지원한 형사 기소 사건 55건의 피고인은 총 70명이다.⁴⁾

전체 피고인 70명의 판결 결과는 징역 32명(46%), 집행유예 27명(38%), 벌금 9명(13%), 무죄 2명(3%)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죄판결은 97%(68건), 무죄판결은 3%(2건)⁵⁾이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피해사건 피고인 39명의 판결 결과는 징역 19명(49%), 집행유예 16명(41%), 벌금 3명(8%), 무죄 1명(2%)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죄판결은 98%(38건), 무죄판결은 2%(1건)이었다.

‘성인’ 피해사건 피고인 31명의 판결 결과는 징역 13명(42%), 집행유예 11명(36%), 벌금 6명(19%), 무죄 1명(3%)으로, 유죄판결은 97%(30건), 무죄판결은 3%(1건)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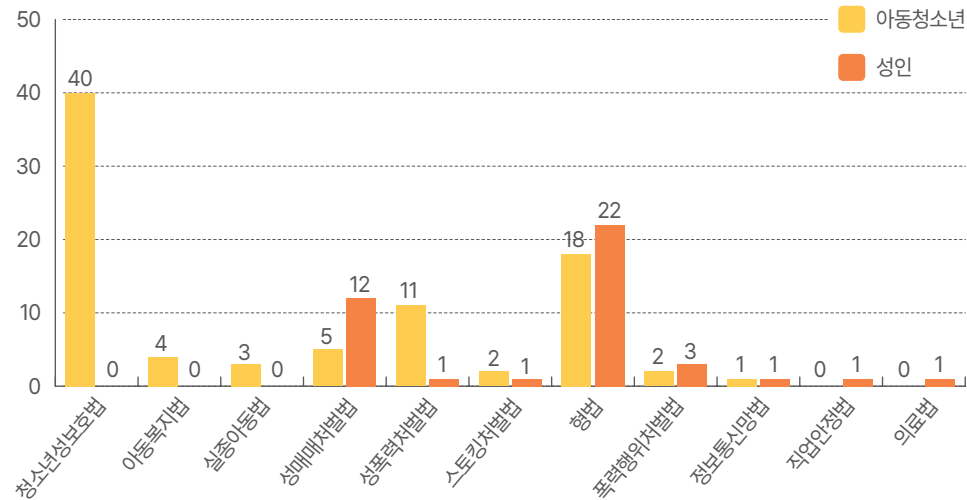
4) 피고인 미성년자로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 5건(피고인 8명)은 사건 추적이 불가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5) 무죄판결(2건)

- ‘아동·청소년’ 피해 사건 무죄(1건): 형법(강간) 사건으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성매수자)에 무죄를 선고하였다.
- ‘성인’ 피해 사건 무죄(1건): 형법(강제추행) 사건으로, 법원은 피해자가 유흥업소 종사자라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고인(성매수자)에 무죄를 선고하였다.

㉔ 피고인 위반법 (피고인 위반 혐의 수 누계)

구분	아동·청소년	성인	총계
청소년성보호법	40	0	40
아동복지법	4	0	4
실종아동법	3	0	3
성매매처벌법	5	12	17
성폭력처벌법	11	1	12
스토킹처벌법	2	1	3
형법	18	22	40
폭력행위처벌법	2	3	5
정보통신망법	1	1	2
직업안정법	0	1	1
의료법	0	1	1
총계	86	42	128



<그림6> 피해자 연령대별 피고인 위반법

센터에서 지원한 형사 기소 사건 피고인 70명의 위반법은 11개 법령에 걸쳐 있으며, 위반 혐의는 중복 누계 기준 총 128건으로 확인되었다. 위반법을 건수 기준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형법 위반이 각각 40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처벌법 위반이 17건(13.2%),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12건(9.4%),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이 5건(3.9%), 아동복지법 위반이 4건(3.1%), 스톱킹처벌법 위반과 실종아동법 위반이 각각 3건(2.3%), 정보통신망법 위반 2건(1.6%), 의료법과 직업안정법 위반이 각각 1건(0.8%)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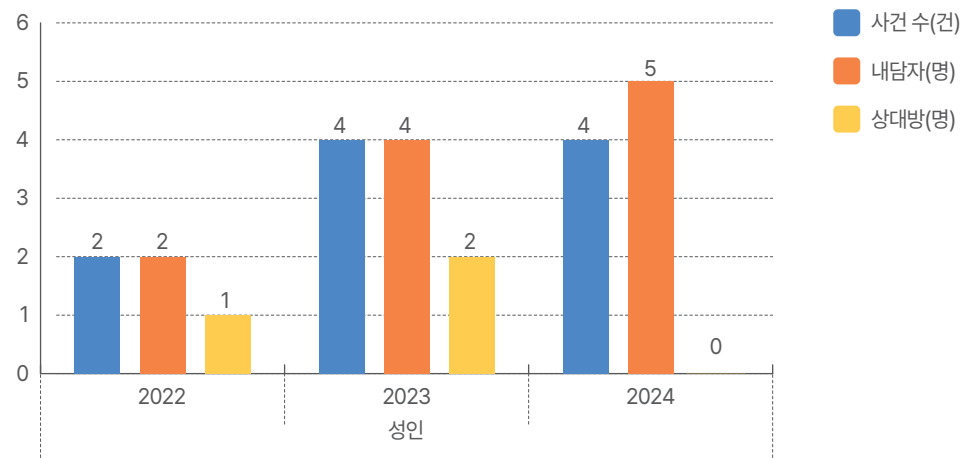
이중 '아동·청소년' 피해사건 피고인 위반법을 살펴보면, 1순위 청소년성보호법(1순위 알선영업행위등 - 2순위 성매수 - 3순위 강요행위등)이 가장 많았고, 이어 2순위 형법(1순위 사기 - 2순위 미성년자의제강간 - 3순위 폭행), 3순위 성폭력처벌법(1순위 촬영물등이용협박 - 2순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등,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확인되었다.

'성인' 피해사건 피고인 위반법은 1순위 형법(1순위 사기 - 2순위 절도 - 3순위 강간치상, 강요, 강제추행, 준강간, 준사기, 협박)이 가장 많았고, 이어 2순위 성매매처벌법(1순위 성매매알선등 - 2순위 성매매 - 3순위 성매매 강요등), 3순위 폭력행위처벌법(1순위 공동폭행)으로 확인되었다.

1-2 피소 [총 10건]

① 피소 사건 수

구분	연도	사건 수(건)	피고인(명): 내담자	상대방(명)
성인	2022	2	2	1
	2023	4	4	2
	2024	4	5	0
	총계	10	11	3



<그림7> 연도별 피소 사건 수

센터에서 지원한 형사 피소 사건 총건수는 10건(2022년 2건, 2023년 4건, 2024년 4건)으로, 피고인(내담자)은 11명이며 모두 성인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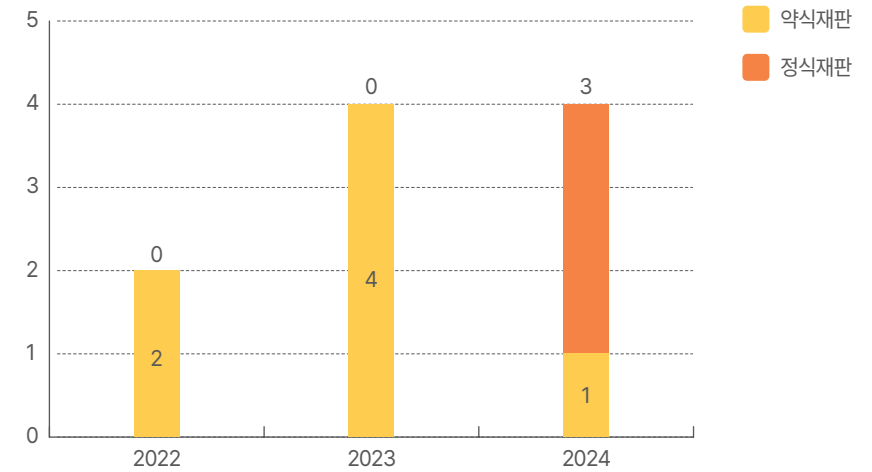
성매매 또는 광고죄 위반 혐의로 단독 입건된 피고인(내담자)은 8명(73%)이며, 소송 상대방이 있는 사건의 피고인(내담자)은 3명(27%)이었다.⁶⁾ 소송에 연루된 상대방은 총 3명으로 확인되었다.

10건 가운데 2024년도에 판결이 선고된 1건은 피고인(내담자) 2명이 성매매 혐의로 공동 재판을 받은 사건으로, 성매매 업소 단속 과정에서 업주, 성매매 여성, 성매수자 등이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혐의로 다수 입건된 사건이다.

6) 형사 피소 10건 중 7건, 총 8명의 피고인(6명 성매매, 2명 성매매 광고)은 경찰 위장수사로 내담자 단독 입건되어 소송 상대방 없이 진행되었다.

② 재판 종류

구분	연도	정식재판	약식재판	총계
성인	2022	2	0	2
	2023	4	0	4
	2024	1	3	4
	총계	7	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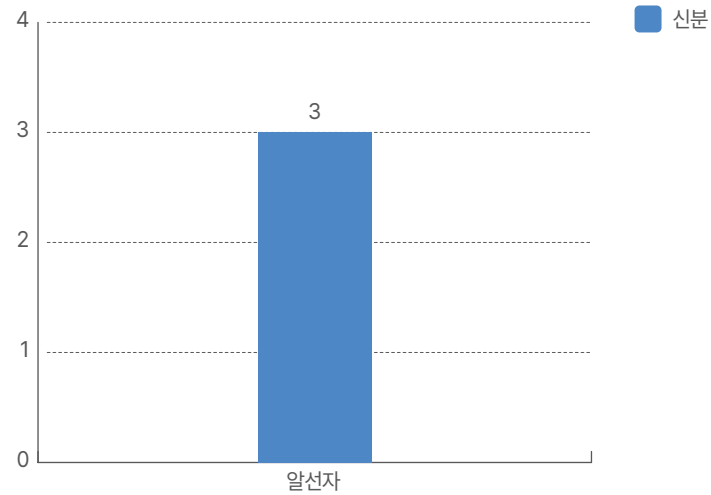


<그림8> 연도별 피소 재판 종류

센터에서 지원한 형사 피소 사건 10건 중 '정식재판'은 70%인 7건(2022년 2건, 2023년 4건, 2024년 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약식재판'은 30%인 3건(2024년 3건)이 진행되었다. 정식재판 7건 중 5건은 최초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고인(내담자)이 센터 법률조력을 받아 정식재판 청구하여 재판으로 진행되었다.

㉔ 피고인(내담자)의 상대측 신분

구분	인원
알선자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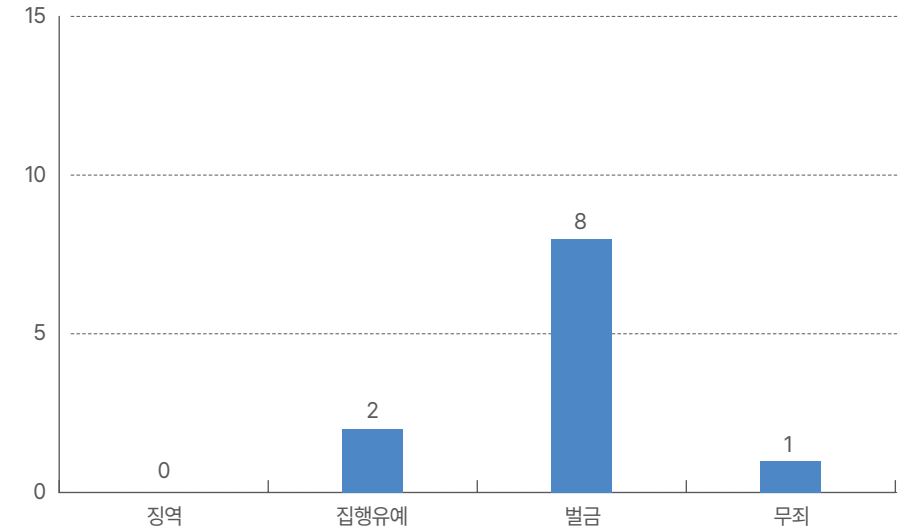


<그림9> 피소 소송 상대측 신분

센터에서 지원한 형사 피소 사건 10건 중, 피고인(내담자) 단독으로 입건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총 3건으로, 확인된 상대방은 총 3명이었다. 소송 상대방의 신분은 모두 알선자(업주 2명, 업소 관계자 1명)였다.

㉕ 피고인(내담자) 재판 판결 결과

구분	징역	집행유예	벌금	무죄	총계
성인	0	2	8	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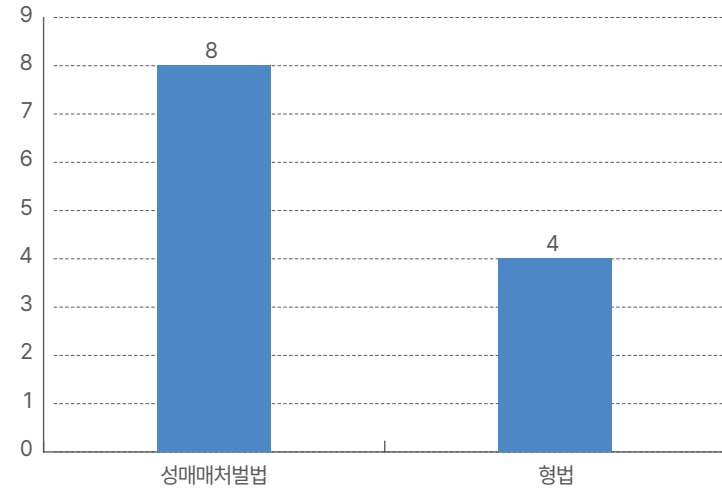


<그림10> 내담자(피고인) 판결 결과

센터에서 지원한 형사 피소 사건 10건의 피고인(내담자)은 총 11명이며, 이들의 판결 결과는 벌금 8명(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집행유예 2명(18%)과 무죄 1명(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피고인(내담자)에 대한 유죄판결은 91%(10건), 무죄판결은 9%(1건)로 확인되었다.

㉞ 피고인(내담자) 위반법 (피고인 위반 혐의수 누계)

구분	성인
성매매처벌법	8
형법	4
총계	12



<그림11> 내담자(피고인) 위반법

센터에서 지원한 형사 피소 사건 피고인(내담자) 11명의 위반법은 2개의 법령에 걸쳐 있으며, 위반 혐의는 중복 누계 기준 총 12건으로 확인되었다. 위반법으로 1순위 성매매처벌법(1순위 성매매 - 2순위 성매매광고⁷⁾)이 가장 높았고, 2순위 형법(1순위 사기⁸⁾ - 2순위 공갈⁹⁾, 주거침입¹⁰⁾)이 뒤를 이었다.

- 7) 형사(피소)성매매처벌법)성매매 광고(2건): 경찰 위장수사로 내담자 단독 입건된 사건이다.
- 8) 형사(피소)형법)사기(2건): 업소 선불금 관련으로 업주·업소 관계자에게 피소된 사건이다.
- 9) 형사(피소)형법)공갈(1건): 내담자는 유흥업소에서의 성매매 과정에서 겪은 건강 문제(자궁경부암 진단)를 업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내담자는 자신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업주에게 성매매 알선 사실을 경찰에 알릴 수 있음을 언급하였고, 그 결과 일부 보상금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업주는 해당 요구를 위협으로 해석해 내담자를 공갈 혐의로 고소하였다.
- 10) 형사(피소)형법)주거침입(1건): 위 각주 9)의 동일 내담자와 업주 간 연계된 사건이다. 내담자는 성매매로 인해 자궁경부암에 걸렸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반송되자, 이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업주의 주거지에 방문하였다. 이 과정에서 업주는 내담자를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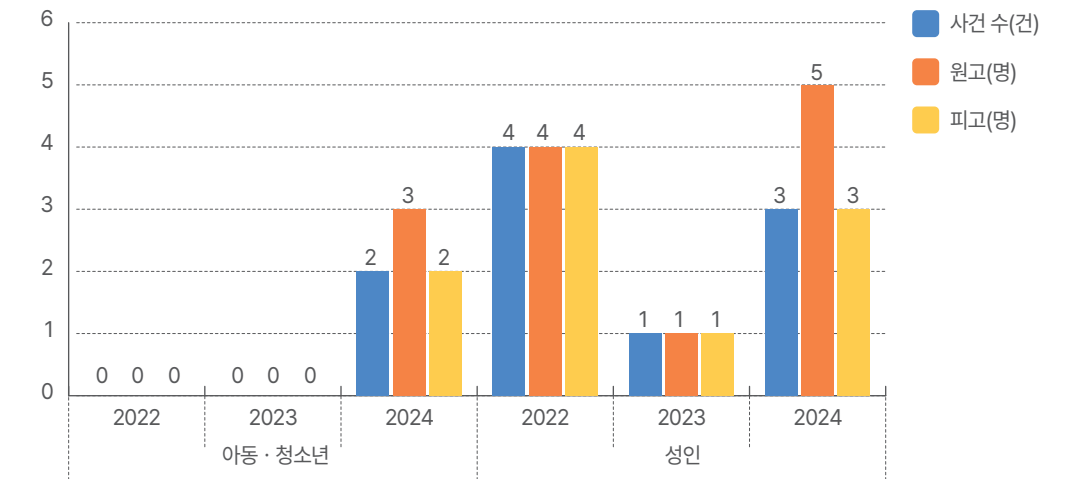
(2) 민사 소송 건수 [총 15건]

전체 소송지원 90건 중 '민사' 소송지원은 총 15건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한다. 이 중 내담자의 '제소' 사건은 10건(67%)이며, '피소' 사건은 5건(33%)이었다.

2-1 제소 [총 10건]

㉞ 제소 사건 수

구분	연도	사건 수(건)	원고(명) : 내담자	피고(명)
성인 (아동·청소년 후속) ¹¹⁾	2022	0	0	0
	2023	0	0	0
	2024	2	3	2
성인	2022	4	4	4
	2023	1	1	1
	2024	3	5	3
총계		10	1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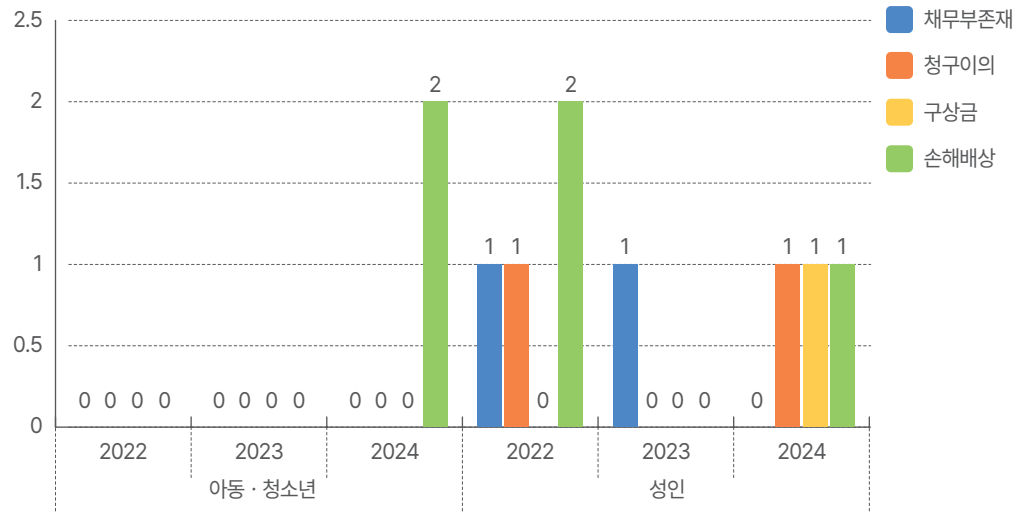
<그림12> 연도별 제소 사건 수

센터에서 지원한 '민사 제소' 사건은 총 10건(2022년 4건 2023년 1건, 2024년 5건)으로, 이 중 '성인(아동·청소년 후속)' 사건은 20%인 2건(2024년)이었고, 일반 '성인' 사건은 80%인 8건(2022년 4건, 2023년 1건, 2024년 3건)이었다. 제소 사건 10건에 대한 원고(내담자)는 총 13명, 피고는 총 10명으로 확인되었다.

11) 아동·청소년은 민사 소송 당사자로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아동·청소년 시기에 발생한 피해 사건을 형사 고소하여 승소한 경우, 성인이 된 시점에 손해배상청구 민사 소송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성인(아동·청소년 후속)'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㉔ 소 종류

구분	연도	채무부존재	청구이의	구상금	손해배상	총계
성인 (아동·청소년 후속)	2022	0	0	0	0	0
	2023	0	0	0	0	0
	2024	0	0	0	2	2
성인	2022	1	1	0	2	4
	2023	1	0	0	0	1
	2024	0	1	1	1	3
총계		2	2	1	5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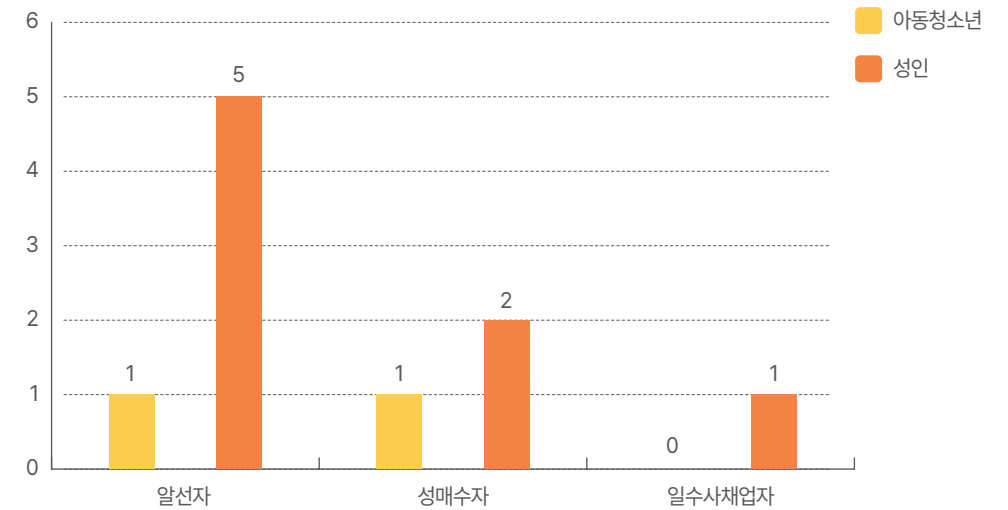
<그림13> 연도별 소 종류

센터가 지원한 민사 제소 사건 총 10건 중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5건(5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채무부존재확인 소 2건(20%), 청구이의 소 2건(20%), 구상권청구의 소 1건(10%) 순으로 확인되었다.

‘성인(아동·청소년 후속)’ 사건 2건은 모두 손해배상청구의 소였고, 일반 ‘성인’ 사건 8건 중에서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3건(37.5%, 2022년 2건, 2024년 1건), 채무부존재확인 소 2건(25%, 2022년 1건, 2023년 1건), 청구이의 소 2건(25%, 2022년 1건, 2024년 1건), 구상권청구의 소 1건(12.5%, 2024년 1건)이 진행되었다.

㉕ 피고 신분

구분	알선자	성매수자	일수사채업자	총계
성인 (아동·청소년 후속)	1	1	0	2
성인	5	2	1	8
총계	6	3	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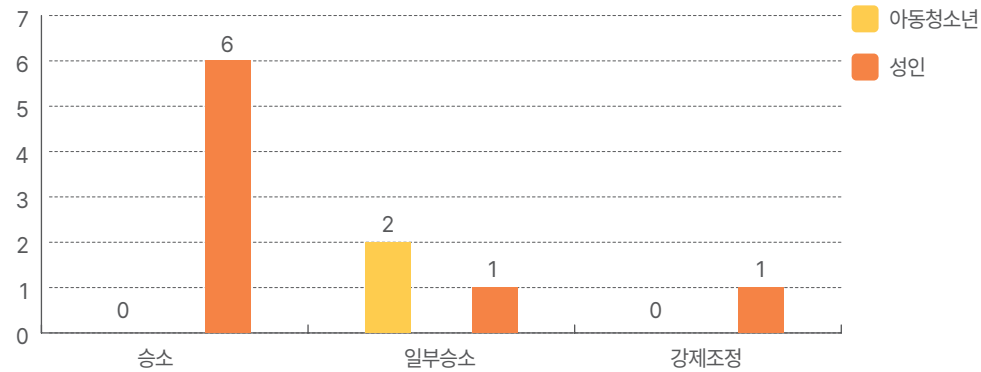
<그림14> 원고 연령대별 피고 신분

센터에서 지원한 민사 제소 사건의 피고 10명의 신분을 살펴보면, 알선자(브로커, 업주, 업소 관계자 등)가 6명(60%), 성매수자가 3명(30%), 일수사채업자가 1명(10%)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성인(아동·청소년 후속)’ 사건 피고 2명은 각각 알선자 1명(50%), 성매수자 1명(50%)이었고, 일반 ‘성인’ 사건 피고 8명은 알선자 5명(62.5%), 성매수자 2명(25%), 일수사채업자 1명(12.5%)으로 나타났다.

㉔ 원고(내담자) 소송 결과

구분	승소	일부승소	강제조정	총계
성인 (아동·청소년 후속)	0	2	0	2
성인	6	1	1	8
총계	6	3	1	10



<그림15> 소송 결과

센터에서 지원한 민사 제소 사건은 총 10건이며, 원고(내담자)는 총 13명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2건은 각각 3명, 2명의 원고(내담자)가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사건이었다.

사건별 판결 결과를 살펴보면, 10건 중 승소는 6건(60%), 일부승소는 3건(30%), 강제조정은 1건(10%) 이었다. 이를 원고(내담자)별로 보면, 총 13명 중 '승소' 8명(61%), '일부승소' 4명(31%)¹²⁾, '강제조정' 1명(8%)¹³⁾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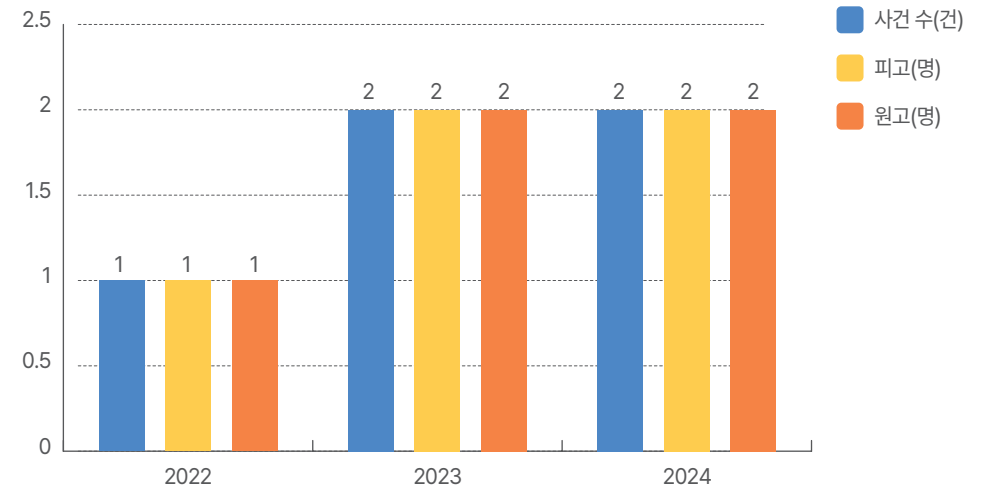
12) 민사 제소 사건 10건 중 3건은 원고(내담자)가 '일부승소'한 사례였다. 이 가운데 2건(원고 각 2명, 1명)은 형사사건 후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였으며, 나머지 1건은 구상금 소송이었다. 이들 사건에서는 원고(내담자)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었으나, 청구 금액의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져 사실상 승소에 가까운 판결로 평가된다.

13) 민사 제소 사건 10건 중 1건은 원고(내담자)와 피고(업주) 사이에서 '강제조정'으로 종결된 사례였다. 이 사건(각주 9), 10) 참조)에서 내담자는 업주의 알선행위로 인해 억울함을 느끼고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가, 오히려 업주로부터 공갈 및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다. 이후 업주는 성매매 전제를 조건으로 한 선불금 채권에 관한 공정증서를 근거로 내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맞서 원고(내담자)는 해당 강제집행에 대해 '청구 이익의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통해 "피고(업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한 원고(내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고 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은 원고(내담자)의 주장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된다. 즉, 피고(업주)가 성매매를 알선·강요하며 취득한 채권은 성매매 선불금 채권으로서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공정증서 또한 무효이며, 더 나아가 원고(내담자)는 피고(업주)의 협박으로 이미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한 바,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실제적 권원이 없는 자가 시도한 강제집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이와 같은 원고(내담자)의 논리를 반영하여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2-2 피소¹⁴⁾ [총 5건]

㉕ 피소 사건 수

구분	연도	사건수(건)	피고(명) : 내담자	원고(명)
성인	2022	1	1	1
	2023	2	2	2
	2024	2	2	2
총계		5	5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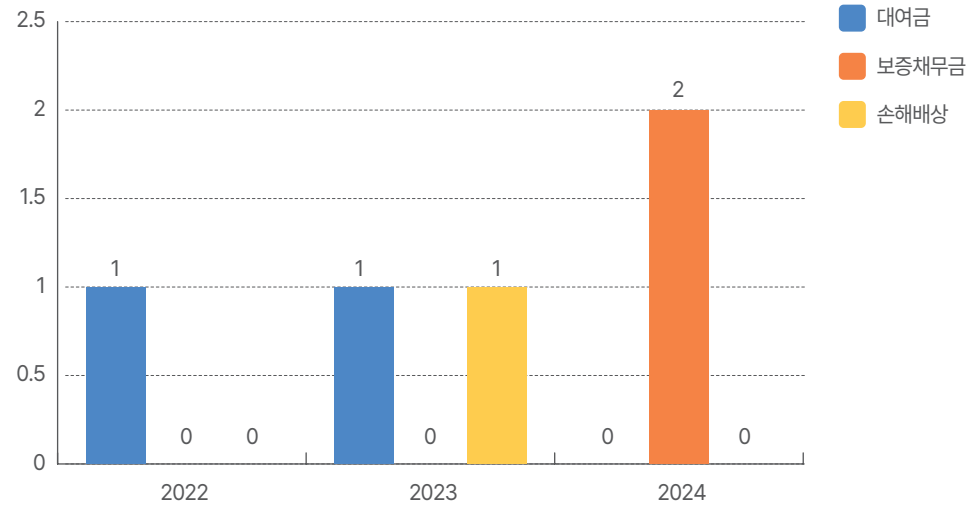
<그림16> 연도별 피소 사건 수

센터에서 지원한 민사 피소 사건 총건수는 5건(2022년 1건, 2023년 2건, 2024년 2건)이며, 피고(내담자)와 원고는 각각 5명으로 확인되었다.

14) 피소 사건 피고는 내담자, 원고는 소송 제기한 자(업주 등)임.

㉔ 소 종류

구분	연도	대여금	보증채무금	손해배상	총계
성인	2022	1	0	0	1
	2023	1	0	1	2
	2024	0	2	0	2
총계		2	2	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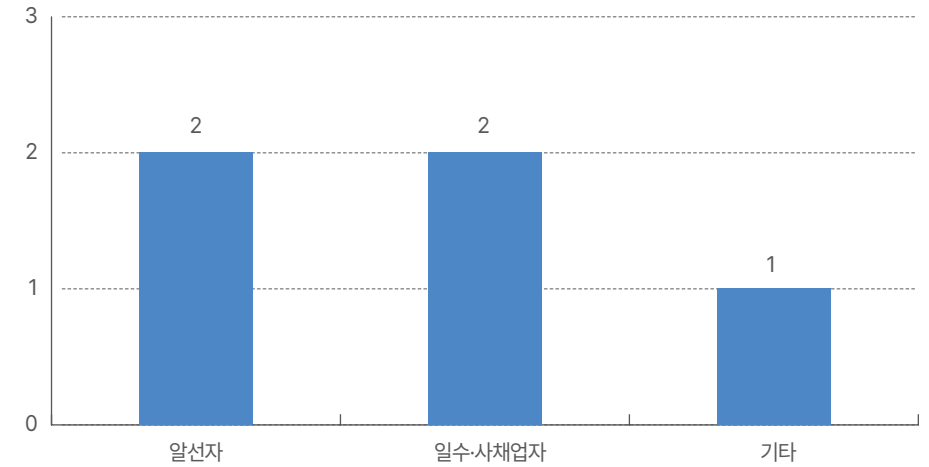


<그림17> 연도별 소 종류

센터에서 지원한 민사 피소 사건 총 5건의 소 종류를 살펴보면, 대여금 소송이 2건(40%), 보증채무금 소송이 2건(40%), 손해배상 소송이 1건(20%)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안 대응 사건은 3건(60%), 추완·항소 사건은 2건(40%)이었다.

㉕ 원고 신분

구분	알선자	일수·사채업자	기타 ¹⁵⁾	총계
인원	2	2	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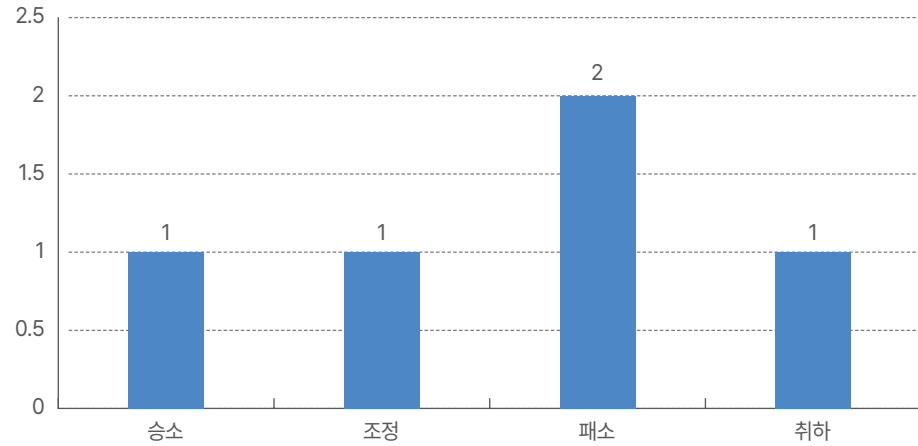
<그림18> 원고(소송 상대측) 신분

센터에서 지원한 민사 피소 사건의 원고 5명의 신분을 살펴보면, 알선자(업주, 업소 관계자)가 2명(40%), 일수·사채업자가 2명(40%), 성매수자의 배우자(아내)가 1명(20%)으로 나타났다.

15) 원고 신분 중 '기타' 해당자는 사례는 성매수자의 배우자(아내)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피고(내담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㉔ 소송 결과

구분	승소	조정	패소	취하	총계
인원	1	1	2	1	5



<그림19> 소송 결과

센터에서 지원한 민사 피소 사건 피고(내담자) 5명에 대한 소송 결과를 살펴보면, 패소 2건(40%)¹⁶⁾이 가장 높았으며, 승소와 조정 성립¹⁷⁾, 소송 취하¹⁸⁾가 각각 1건(20%)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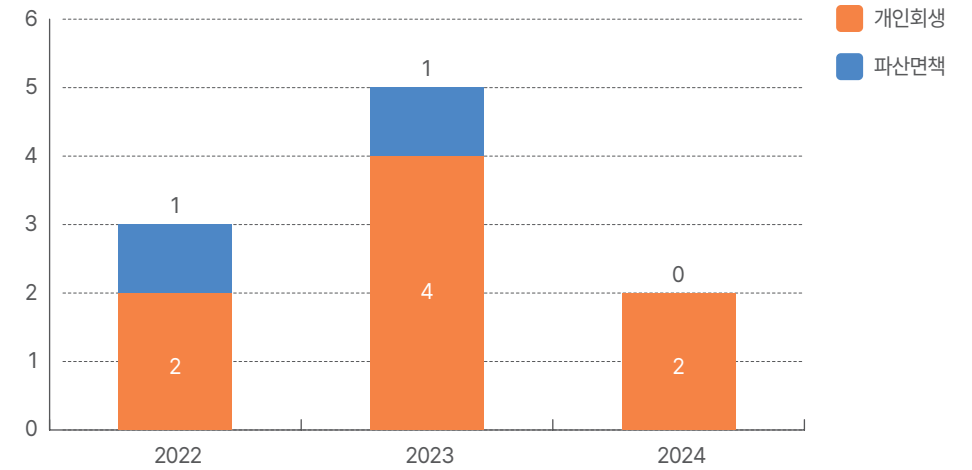
16) 패소한 2건은 모두 피고(내담자)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법원이 원고(업주, 승계인수인)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한 사건들이다.

(1) 업주에 의한 대여금 피소(증거불충분 패소): 피고(내담자)는 유흥업소에서의 선불금을 갚기 위해 1998년 원고(업소 관계자)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금전을 빌린 바 있다. 이후 원고(업소 관계자)는 2003년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사건은 공시송달 승소하였다. 이어 2013년 원고(업소 관계자)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2021년 사건을 인지한 피고(내담자)는 추완항소를 통해 해당 대여금 채권이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전소 판결을 뒤집을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내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p.164 사례 1 참조)

(2) 업주에 의한 보증채무금 피소(증거불충분 패소): ㉠ 선불금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내담자)는 원고(망 이○○)가 원채무자(유흥업소 타여성, 내담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대어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보증금채권 미포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내담자)는 원고(망 이○○)와 승계인수인(사채업자)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에 자신에 대한 채권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2022년 4월 29일 승계인수인과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기각되었다. ㉢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내담자)는 2002년도에 발생한 원채무자(유흥업소 타여성, 내담자가 연대보증인)의 채무는 변제기를 2003년도로 정한 후 2013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증채무도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해당 여성을 상대로 2012년에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이미 승소판결을 받아 소멸시효가 중단된 점을 인정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p.166 사례 2 참조)

(3) 파산 및 개인회생 [총 10건]

연도	파산면책	개인회생	총계
2022	2	1	3
2023	4	1	5
2024	2	0	2
총계	8	2	10



<그림20> 연도별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례 수

전체 소송지원 90건 중 '파산 및 개인회생' 소송지원은 총 10건으로 전체의 11%를 차지한다.

이 중 센터에서 지원한 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은 총 10건(2022년 3건, 2023년 5건, 2024년 2건)이다. 이 중 파산·면책 사건이 8건(80%; 2022년 2건, 2023년 4건, 2024년 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개인회생 사건은 2건(20%; 2022년 1건, 2023년 1건)으로 확인되었다.

17) 해당 사례는 성매수자의 배우자(아내)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피고(내담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료를 요구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결되었다. 원고(성매수자 아내)는 피고(내담자)에게 2,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피고(내담자)가 원고(성매수자 아내)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다. 또한 피고(내담자)는 원고(성매수자 아내)와 원고의 배우자(성매수자)에게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결정되었다. 아울러 피고(내담자)는 원고의 배우자(성매수자)에 대해 본 사건과 관련한 구상금 등 어떠한 민사상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원고(성매수자 아내)는 피고(내담자)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였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p.168 사례 3 참조)

18) 각주 16)번 (2)의 동일 업주 및 내담자의 선행 사건으로, 원고(업주)가 보증채무금 소송을 걸었다가 소취하하고, 각주 16) 소송으로 재진행하였다.

2022-2024년, 다시함께상담센터 활동 중심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판례집

II-1

형사-아동·청소년

1 성매수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37
2 관련 법률	39
3 판례분석	48

II-1 형사-아동·청소년



1 성매수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법률사무소 정, 변호사 문혜정

지난 몇 해 동안 법률지원단의 일원으로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변론하였다. 이번 판례집 원고 작성 과정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주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여전히 놓치고 있는지를 더욱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성매수 관련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피해자가 처한 생활환경·경제적 취약성·관계적 고립을 범죄의 구조적 배경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개별 사건의 '진술 일관성' 또는 '합의 여부'와 같은 외형적 요소에 집중하는 접근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이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단순히 금전과 성적 접촉의 교환 관계가 아니라, 취약성을 매개로 한 착취, 지배, 종속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은 종종 '동의 여부'나 '선택의 자유'에 관한 질문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피해자의 주거 불안, 관계 단절, 탈가정 경험, 심리적 의존 등은 범죄 성립과 양형에서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구조적 맥락은 여전히 부차적인 사정으로 밀려나기 쉽다.

성매수 관련 판결들은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성착취 예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폭행·협박이 드러나는 경우에만 중대범죄로 다루고, 경제적 유인이나 정서적 지배를 통한 착취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취급하는 판결 흐름은, 결국 성매수 범죄를 거래의 틀 안에 가두고, 피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든다. 반대로, 피해자의 취약성과 종속의 양상이 명확히 인정된 판결들은 성매수 범죄의 구조적 성격을 정확히 지적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건에서의 법리적 판단 기준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이들은 결코 '선택'하지 않았다. 그들은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있었고, 범행은 그 구조를 악용해 성립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존재여야 한다. 피해자의 존엄과 회복 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가해자의 행위가 만들어낸 관계 지배·착취·종속의 작동 과정을 정확히 포착하는 판결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아동·청소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변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판결문의 표현을 빌리고자 한다. "성매매는 권력에 의한 비가시적 폭력상황이다. 순수한 자발적 성매매는 없다. 아이들에게 왜 이런 거미줄에

걸렸냐고 과연 탓할 수 있겠는가. 거미줄을 걷어내는 노력이 절실하다(울산지방법원 2020. 10. 8. 선고 2020 고합73 판결)”

이번 판례집이 아동·청소년 성착취 사건의 실상을 드러내고, 사법적 판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작은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 더 나아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이 사회에서 단 한 명이라도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과 대응의 목소리가 더욱 강해지기를 기대한다.

2 관련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교 행위
 -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라. 자위 행위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란 피해아동·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 제2항·제14조·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
-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조의2(예비, 음모)

제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제8조에 따른 장애 아동·청소년으로서 16세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공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해당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 ㉠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 제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1조의2(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그 아동·청소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㉓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㉔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 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㉒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㉒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㉓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 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3.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 ㉒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㉓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㉔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 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 ㉒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 ㉓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㉑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 ㉒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16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 ㉑ 법원은 피해아동·청소년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하게 하여야 한다.

- ㉔ 제1항은 수사기관이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 ㉕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조치 등)

- 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를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
- ㉒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지체 없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㉓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과의 연계
 2.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의 참여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71조(벌칙)

- ㉑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보호법

제4조(사회의 책임)

- ㉑ 누구든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이 청소년유해환경에 접할 수 없도록 하거나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할 것
 2.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청소년폭력·학대 등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선도할 것
 3.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이 유통되고 있거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청소년이 청소년폭력·학대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에 신고·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것
- ㉒ 매체물과 약물 등의 유통을 업으로 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의 경영을 업으로 하는 자와 이들로 구성된 단체 및 협회 등은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율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 ㉑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㉒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 ㉓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 ㉔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㉕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친권자등을 동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소의 경우에는 출입할 수 없다.
- ㉖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보호법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2.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희를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3.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4.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인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5.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7.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9.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제32조(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 제한)

- ① 제30조에 따른 행위를 한 자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 ② 제2조제5호가목3) 및 나목3)에 따른 업소의 업주가 고용과 관련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실종아동법]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3 판례분석

2022~2024년 3년동안 센터는 아동·청소년 법률지원의 일환으로 총 22건의 경·검 수사지원과 27건의 재판 소송지원을 진행하였다. 본 판례집에서 판결선고까지 진행된 27건의 사례 중, 아동·청소년 피해사건 총 21건의 판결 내용을 담았다.

[성매수 3건, 성매수 및 복합피해(강간, 준강간, 성착취물 이용범죄, 사기) 11건, 성매매알선 2건, 성매매알선 및 복합피해 5건]

1) 아동·청소년 성매수 (3건)

아동·청소년 성매수 단독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총 3건이었다. 이 중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피고인 1건에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나머지 2건의 피고인에게는 각 법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판례 요약

사례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2. 선고 2021고합19 판결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터넷 채팅어플로 연락하여 만난 적이 있는 사이로서,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가출하여 돈이 필요한 피해자(17세)에게 '만나서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와 2회 성교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법원의 판단

가출한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키려는 피고인의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지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례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3고합309 판결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14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태운 다음 ○○역까지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7만 원을 송금하였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터넷에 여중생 스타킹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성매매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초범이다.

사례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합26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13. 선고 2024노794 판결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A(15세), 피해자 B(15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주문

○ 1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2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A와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9년 성인 성매수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례 분석

check point

- **사례 1** 피고인은 가출하여 돈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하며 성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재차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며 부인하였으나,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성관계의 대가로 돈을 주고받기로 약속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지급한 돈에 대하여 성관계의 대가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음에도,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 아쉽다.
- **사례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성매수를 제안하였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 자체는 불량하다고 보면서도, 성행위 과정에서 강압적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 **사례 3** 피고인은 과거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로 집행유예를, 성인 대상 성매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2명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수를 반복하였고, 이러한 범행이 누적된 이후에야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이 사례는 전과 기록이 경미할 때 초기에 충분히 억제되지 않을 경우 범죄가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 변호사 Comment

피해자의 나이가 16세 미만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하나, 사례 2, 3 모두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만이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 제2항)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성매수 행위와 의제강간 행위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이다. 그런데도 아직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관련 조항의 적용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받을 때가 많다. 피해자 변호사로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단순 성매수 혐의에서 나아가 가중처벌 규정 및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2)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추가 범죄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성매수를 포함한 복합피해를 경험한 사건은 총 11건이었으며,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강간(5건), 준강간(1건), 성착취물이용범죄(3건), 사기(2건)이다.

(1) 성매수 및 강간/준강간 (6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하도록 권유·유인한 뒤 성매수하고,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총 5건이었다. 이 중 피고인 6명에 대하여 2명은 ‘징역형’, 2명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무죄’ 판결 1명과 ‘소년부 송치’ 1명도 있었다.

또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1건 있었으며, 해당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판례 요약

사례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고합20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5. 19. 선고 2021노205 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6486 판결

사건명

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18세)에게 상가건물 남자화장실에서 유사성교 1회, 성교 1회를 해주면 각 15만 원씩 합계 3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이른바 ‘조건만남’을 약속하였다. 약속대로 피해자와 유사성교 1회, 성교 1회를 마친 후, 피고인은 억지로 피해자를 눌러 앉히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아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는 등 저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주문

○ 1심
피고인은 무죄.

○ 2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3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법원의 판단

1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묵묵부답하는 태도에 대해 공소 사실이 사실임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려우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의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주었다. 2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폭행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진술은 성관계 내용 및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위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번복되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사례 5

인천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고합68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8. 26. 선고 2022노385 판결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강요미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14세)가 ‘트위터’에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시간 동안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13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만나 유사성행위 및 성행위를 하였고, 성행위 이후 추가 성행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1회 강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유사성행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차단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주문

○ 1심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 2심
이 사건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징역형에 처하였지만,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4세에 불과하다는 점, 피고인에게 향후 강한 피해자에게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회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였다.

2심 재판부에서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별다른 비행을 저지른 적이 없이 양호하게 학교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고, 부모는 향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교육하고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하는 것보다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사례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3. 17. 선고 2021고합41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노632 판결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17세)를 만나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총 2회 강간하였다.

주문

- 1심
피고인은 무죄.
- 2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2차례 강간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법원은 아래와 같은 판단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 가. 피해자 진술 중 주요 부분의 비일관성
 - 나. 피해자 진술의 비합리성 등: 피해자가 스키니진을 착용하였는데, 스키니진의 특성상 한 손으로 벗기기 어려운 재질이며, 강제로 벗기는 과정에서 굽히거나 멍이 드는 등의 상처를 전혀 입지 않았다는 것이 다소 이례적. 성관계 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잠을 잤다는 점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여겨지지 않음

- 다. 범행 후의 이례적인 정황: 사건 이후 채팅 어플을 통해 다른 남성을 만나 성매매를 한 점
- 라.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 마. 피고인의 진술 내용은 일관적이다.

사례 7

수원지방법원 2022. 4. 26. 선고 2021고합647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3. 1. 10. 선고 2022노384 판결

사건명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여 피해자(14세)를 유인하였다. 모텔에서 1회 간음하고, 객실을 옮긴 뒤,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주문

- 1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 2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 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14세의 어린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저지른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경제적 곤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이므로, 피고인의 나이(이 사건 범행 당시 19세),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하였으나, 실형은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사례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8. 선고 2023고합2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노2135 판결

사건명

미성년제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간음유인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알게 된 피해자(14세)가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교부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줄 것을 약속하며, 60만 원이 든 봉투를 두는 척을 하고, 17,000원이 든 봉투를 두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가 씻는 사이에 도망쳐 뛰어나왔다.

주문

○ 1심
[피고인 A]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2심
[피고인 B]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4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는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인다.

[피고인 B]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4세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행위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에 처하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성매매 자체는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이상 간음에 관한 위계의 정도가 약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당시 피해자가 카카오톡 대화 중 18세라고 밝혀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대상이 되는 16세 미만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이중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사례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1. 25. 선고 2019고합85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7. 6. 선고 2021노1065 판결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도9094 판결

사건명

준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18세)와 모텔에 투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마약 투약을 거부하는 위 피해자에게 '소량이고 너 기분 좋으라고 하니까 그냥 참으라고' 말하며 강제로 팔을 잡고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주사하고, 불상량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환각, 흥분 등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호텔에서 아동·청소년인 G(당시 17세)에게 현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행위를 하는 도중에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론가스')가 주원료인 크림 워퍼 충전 캔을 크림 제조기에 넣은 다음 가스 분출구를 통해 분사된 아산화질소 가스를 입으로 흡입하였다.

주문

○ 1심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약물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8만 원을 추징한다.
 수원지방법검찰청 성남지청에 압수된 것 모두 몰수한다.

○ 2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마약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8만 원을 추징한다.
 수원지방법검찰청 성남지청에 압수된 것 모두 몰수한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놓이게 하여 간음하고, 필로폰을 투약·매수·수수·소지하고 환각물질을 흡입·소지하였으며,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판례 분석

check point

- **사례 4** 검찰은 피고인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를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에서 형법상 강간으로 변경하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의 차이를 문제 삼아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고, 피고인의 ‘강간이 아닌 성매매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심에서는 전문심리위원의 진술 감정을 받았고 신빙성을 인정받아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고소부터 최종 판결 확정까지 총 4년이 소요되었는데,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이자 등록된 경도 지적장애인이었다.
- **사례 5** 피고인의 범행은 강간, 성매수, 강간미수 등 세 가지 죄명이 포함될 만큼 매우 계획적이고 지속적·치밀하였으나, 피고인의 연령이 만 14세에 불과하여 소년부 송치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판결 또한 추적이 불가하였다.
- **사례 6** 본 사례처럼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어렵거나 일부 진술이 반복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특성을 조목조목 문제 삼고, 사건 이후 피해자의 행동(다른 조건만남 등)을 근거로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는 등 피해자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판단을 내렸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적이라는 점을 법원의 판단에 고려하였는데, 피고인이 일관되게 거짓 진술을 하면 그 ‘일관성’이 양형이나 무죄 판단에서 참작되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 **사례 7** 피고인은 14세의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 돈을 줄 것처럼 유인하여 강간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2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의 나이(당시 19세) 등의 이유를 참작하여 형을 낮추주었다.
- **사례 8**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성매수하였다. 피고인 B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거액의 현금을 줄 것처럼 기망하여 유인하여 간음하고 도주하였다. 1심에서는 피고인 A는 집행유예, 피고인 B 징역 3년 6월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 B와 검사가 쌍방 항소하였고, 재판부는 ‘성매매 자체는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이상 간음에 관한 위계의 정도가 약하다’고 평가하였고, 피해자가 14세이나, 피고인과의 대화 중 18세라고 밝혀 피해자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대상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에 대해 받아들였다.
- **사례 9** 피고인의 마약 투약은 이미 상습적이었고, 이 사건 범행은 마약 범죄·성범죄·청소년 성착취 범죄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중대한 사안이었다. 피고인은 단순한 마약 투약을 넘어 타인에게 강제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하여 강간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였다. 더 나아가 집행유예라는 국가의 최후의 선처 기회를 무시한 채 다시 마약 범행과 성범죄를 저지른 점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되었다. 그러나 실제 선고형은 법정형의 최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피해자 변호사 Comment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여전히 경직되어 있으며, 피해가 발생하는 구조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사례 4에서 보듯,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반복적인 진술을 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일부 변형되었음을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이는 성폭력 피해의 기억 특성, 회피·부정 등 트라우마 반응 등을 간과한 판단이다. 2심에서 징역형 선고로 원심이 파기된 것은 고무적이거나,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결코 가볍지 않다. 사례 5에서 피고인이 만 14세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처분에 그친 사례는, 가해자의 미성숙성을 주요 고려 요소로 삼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와 사건 전반에 내재한 강압적·착취적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사건에서 가해자의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양상이 관찰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연령을 감경 사유로 삼는 접근은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라는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 한편, 경제적 이익을 미끼로 한 유인·간음, 협박, 마약 투약과 같은 중대한 추가 가해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나 무죄가 일부 선고된 점은, 성착취 범죄가 갖는 권력 불균형과 지배 관계에 대한 이해가 미흡함을 보여준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직접 마약을 투약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야기하고 성관계를 한 경우, 강간죄의 폭행이 아닌 준강간죄의 항거불능으로 의율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2) 성매수 및 성착취물 이용범죄 (3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목적으로 권유·유인하여 성매수 하면서, 그 과정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추가 범행(간음·강간, 협박, 스토킹 등)에 이른 사건은 총 3건이었다.

이 중 2건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밀미로 협박·강요·스토킹에 이르는 등 중대한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재판부는 모두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한편, 통신매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성매수한 1건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판례 요약

사례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8. 12. 선고 2021고합46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1. 12. 3. 선고 2021노623 판결
대법원 2022. 2. 8. 선고 2021도17414 판결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14세)에게 '나와 1회 성관계를 하면 30만 원, 2회 하면 50만 원, 긴 밤은 100만 원을 주겠다, 2회 성관계를 가지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를 하여 성매수를 하였다. 피해자와 성관계 과정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교 행위를 포함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동영상을 유폐하겠다고 협박하며,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 하였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만남에 응하도록 한 뒤, 모텔에서 '동영상을 지워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끝나고 지워주겠다, 너 이거 신고하면 너만 들어 간다, 들어가고 싶냐'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주문

○ 1심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압수된 증 휴대폰 및 전자정보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처명령청구를 기각한다.

○ 2심
피고인 겸 피부처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3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의 어린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실제로 성매매를 한 다음, 그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만남을 강요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합의를 위한 시간을 달라는 요청에 따라 선고를 연기해 주었으나 끝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오히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가족을 통해 어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측이 법원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사례 11

인천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고합89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6. 28. 선고 2024노601 판결
대법원 2024. 8. 8. 선고 2024도11329 판결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3회에 걸쳐 성매수를 한 뒤 피해자를 스톱킹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1회 더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착취물을 실제로 유포하기까지 하였다.

주문

○ 1심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40시간의 스톱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전화 1대를 몰수한다.

○ 2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3심
피고인 상고 취하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범행의 내용, 수법, 기간 및 횟수,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을 피하려는 피해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스톱킹하거나 연락을 지속하여 피해자를 괴롭혔고 피해자가 괴로워함에도 오히려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작한 성착취물을 일부 유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기재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장기간에 걸쳐 위 성착취물이 유포되거나 주변에 알려질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다만 피해자 측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는바, 위 공탁 사실을 제한적으로만 고려한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사례 12

전주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고합163 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 10. 23. 선고 2024노76 판결
대법원 2025. 1. 9. 2024도17386 판결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B(14세)가 여고생 스타킹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자위행위 또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를 해주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영상통화를 하던 중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속한 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디스코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불상의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빠는 등의 영상 17개를 시청하였다.

주문

○ 1심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모바일기기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12,000,000원에,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모바일기기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3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법원의 판단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왜곡된 성인식을 개선하고,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있는 그릇된 성적 욕구를 억제하도록 할 필요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영상통화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피해자의 노출된 신체나 자위행위 모습 등을 보았을 뿐, 이를 동영상으로 저장하거나 사진으로 캡처하는 등의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가지 않았고, 편취금의 액수도 비교적 크지 않다. 당심에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형사 공탁금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례 분석

check point

○ 사례 10 이 사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이후 처리된 사례로, 고소 시점까지 가해자의 지속적 협박이 이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센터 상담 시작 후 약 1개월 내에 경찰 수사 착수부터 재판 개시까지 이뤄진 신속한 원스톱 지원이 돋보였다. 고소장 접수 후 피해자 진술 확보, 피의자 특정, 영장 신청 및 발부,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주장하며 책임 감경을 시도하였고, 가족을 통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도록 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여 결국 가중처벌을 받았다. 이 사례는 법 개정 이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강화된 처벌이 가능함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 사례 11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총 64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전송하도록 강압하고, 총 3회에 걸쳐 성매수를 하는 등 반복적·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추가 만남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는 총 40회에 걸쳐 스토킹과 성착취물 이용 협박을 가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공탁금 5,000만 원을 납부하였으나, 징역형을 면치 못하였다. 2022년 형사공탁 특례제도¹⁹⁾ 도입 이후 일부 아동·청소년 성범죄

19) 2022년 12월부터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공탁을 할 수 있는 특례제도가 신설되었다. 형사공탁제도는 감형만을 위한 기습공탁과 먹튀공탁 등이 꾸준히 문제가 되어와 2025년 형사소송법, 공탁법이 개정되었다.

○ 기습공탁: 법원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피고인이 판결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하는 행위

○ 먹튀공탁: 피고인이 형사공탁으로 감형을 받은 뒤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은 동안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행위

[개정 형사소송법]

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유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의견 청취 방법 및 절차,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공탁법]

①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변제공탁절차,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사유로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

* 단,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무죄판결이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 허용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공탁금을 감형 요소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공탁 수령 의사가 없음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했으나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걸었고, 재판부는 이를 제한적으로 고려하였다. 이 사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서 공탁금 감면 제도가 피해자의 의사와 상충할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일부 피고인의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되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 사례 12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성적 목적의 대화 등 디지털 성범죄를 위해 접근하고, 온라인상 성적 행위에 대해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영상통화를 통해 피해자를 성착취하였다. 특히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영상통화 등 통신매체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가 성매수로 인정되어 처분된 점은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14세 의제강간 연령의 아동·청소년 성범죄임에도, 성착취물을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고인이 형사 공탁금 2,000만 원을 납부한 점이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되어 벌금형에 그쳤는데, 이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중대성과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피해자 변호사 Comment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는 초기의 성매수·권유·유인을 출발점으로 하여, 촬영·소지·유포 협박 등 이차적 착취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대하다. 사례 10에서 보듯, 피고인은 성행위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고 이를 빌미로 유포 협박과 추가 만남 및 강간에 이르렀으며, 만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통제하였다. 이는 단일 행위가 아니라 '촬영 → 협박 → 통제 → 반복적 성착취'로 이어지는 구조적 범행 양상을 명확히 보여준다. 사례 11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총 64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하고, 반복적으로 성매수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지속적인 스토킹과 협박으로 지배 관계를 유지하였다. 사례 12는 비록 대면 접촉이 없었음에도, 영상통화 등을 통해 피해자의 성적 행위를 이끌어낸 점을 성매수로 인정한 것은 비대면·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실질적으로 규율하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판결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가 단순한 '거래'나 '합의된 교류'가 아닌, 성적 지배와 반복적 착취에 기반한 범죄 구조임을 인식하고, 비대면 환경에서도 동일한 법익침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3) 성매수 및 사기 (2건)

아동·청소년을 기망하여 사기로 성을 매수한 사건은 총 3건이었다(피해자에게 성행위를 요구하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성행위를 한 뒤 약속된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행위를 한 사례).

이 중 정식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은 2건만 사례로 다뤘으며, 1건은 '집행유예', 다른 1건은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나머지 1건은 약식기소로 진행되어 '벌금형(5,000,000원)'에 그쳤다.

판례 요약

사례 13

수원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고합433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5. 17. 선고 2022노147 판결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사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폰비' 내지 성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A(17세)에게 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5회 성교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으나, 약속한 성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B(21세)에게도 '한 달 5회 만나 성관계하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성교행위를 하였으나, 약속한 '스폰비' 내지 성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C(21세)에게 1,0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문

○ 1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 2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압수된 삼성 휴대폰(증 제1호)을 몰수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 C에게 각 6,000,000원을 변제한 점을 고려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2심 법원은 피고인이 미성년자 피해자 A에게 1,800만 원, 피해자 B, C에게 각 6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사례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5. 12. 선고 2021고합346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9. 6. 선고 2022노477 판결

사건명

사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16세)에게 “성관계 4시간에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총 2회 성관계를 하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약속대로 화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주문

- 1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2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고, 지급하기로 약속한 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례 분석

check point

- 사례 13 내담자 2명(17세, 21세)이 공동으로 고소하면서 사건화되었고, 이후 또 다른 성인 내담자(21세) 피해자가 확인되어 추가 고소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총 3명의 아동·청소년 및 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소위 '스폰비'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성행위를 한 후,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도주·잠적하였다. 1심에서는 피고인에게 1년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이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기망하여 성착취한 범행임에도, 경제적으로 환산이 불가능한 성착취 피해와 비교하여, 성매매 시 필히 지급해야 하는 금원을 뒤늦게 지급한 사실을 피해회복 노력으로 참작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 사례 14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16세)에게 거액의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성매수한 후, 약속한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사기 성매수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선정하고, 범죄의 계획성과 의도성이 명백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점에서 선고 형량이 낮게 평가되었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약취·유인의 성격을 부각했을 경우, 위계·위력 간음죄 적용이 가능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범죄 성격이 더욱 중대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피해자 변호사 Comment

사례 13에서는 피해자들이 트위터 공동고발 계정을 통해 연대하여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가 디지털 공간에서 확장되고 피해가 공유·확인되는 양상이 명확히 드러난다. 피고인은 성매매 대금 지급을 약속하여 성행위를 이끌어낸 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식을 동일하게 반복하였고, 피해자는 성적 착취뿐 아니라 금전적 사기 피해까지 중첩적으로 입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금전 거래를 미끼로 한 사기 범죄의 외형을 가지나,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취약성과 연령적 취약성을 동시에 이용한 성착취 구조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입는 심리적·신체적·경제적 피해가 중첩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양형 판단 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3)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알선 (2건)

피고인은 갈 곳 없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한 사건이 1건 있었고, '업으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건이 1건 있었다. 피고인 모두 '징역형' 선고 받았다.

판례 요약

사례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1고합4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7. 11. 선고 2023노251 판결
대법원 2023. 9. 1. 선고 2023도10039 판결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15세), 피해자 B(15세)가 가출 청소년으로서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숙식을 제공하며 같이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매수자를 모집한 후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이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주문

○ 1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2심/3심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약 5년간 4차례의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 3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피고인에게 과연 법질서를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이와 같은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각 300만 원씩 형사공탁을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례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고합87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8. 18. 선고 2023노1175 판결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알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16세)로부터 '갈 곳이 없다'라는 연락을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게 한 후, 피해자 B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후 성매매 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트위터 및 어플에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피해자 B가 하루 1~2회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주문

○ 1심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각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 아이폰 각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 아이폰 각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B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수시로 성매수자에 대한 응대를 강요한 점, 성매매의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대부분을 취득하여 피해자를 착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B에게 용서의 노력을 기울인 점, 성매매 알선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2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행위를 계속 반복하여 함으로써 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으며,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기간에 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위치 공유 어플리케이션으로 피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도 하였고, 어떤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성매수자를 만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적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약정한 합의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는데, 이 법원에 이르러 나머지 합의금에 일정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례 분석

check point

- **사례 15**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탈가정 청소년임을 알고,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재판에 임했으며,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어 실형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나 선고된 징역 2년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의 법정 최고형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죄질과 범행의 중대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후 센터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후속 민사 소송(손해배상)을 진행하였다.
- **사례 16** 피고인 및 피고인 변호인은 성매매 알선 기간이 짧고,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이익도 적어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하였다. 이에 2심 재판부에서는 범행기간 동안 하루 평균 1~2회 알선한 점, 피해자가 계속 성매수자를 만나도록 유도한 점, 피해자가 성매수자에게 받은 대가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지급받아 필요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한동안 더 알선을 계속할 의사가 보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행위를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계속 반복함으로써 '업으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이 부분 주장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1심에서는 범행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지만, 2심에서는 피고인의 궁박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계속·반복적으로 알선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과 경위, 범행방법, 범행기간과 알선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한 점이 다르다.

피해자 변호사 Comment

이들 사례는 주거·경제·가족 관계에서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 피해자를 표적화하여 성적 종속 관계를 형성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탈가정·고립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시스템과 사후 피해 회복 체계가 형사처벌과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 강요와 알선은 단순한 금전적 목적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 조건을 악용하여 장기간 통제·지배하는 착취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그 중대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가 스스로 벗어나기 어려운 종속 관계를 만들어 지속적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법정형의 상한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은 양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범죄의 구조적 악질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드러난다. 따라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취약성, 범행의 반복성·경제적 이익·지배 관계 형성 여부 등 '착취 구조의 실질'을 양형에 충실히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형사판결과 별도로 주거지원·심리치료·법률구제 등 통합적 보호 체계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아동·청소년 성매매 강요/알선 및 추가 범죄 (5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알선 및 강요 범행에 더하여 추가 범행이 가해진 사건은 총 5건이다. 모두 공동 범행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한 사건 당 여러 명의 피고인이 존재한다. 총 5개 사건 16명의 피고인이 있으며, 이 중 8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2명은 '벌금형', 6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례 요약

사례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5. 4. 선고 2020고단3255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1. 11. 선고 2020고단3255-1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7. 5. 선고 2023노1058 판결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²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생활하던 중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피해자 D(21세, 지적장애 2급), 피해자 E(18세)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채팅을 통해 성매수자를 구한 다음 성매매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D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 E에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주문

○ 1심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8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또는 병합 사건이 있는 경우, 내담자와 관련된 혐의에 *표기함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2심

[피고인 C]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법원의 판단

○ 1심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수익금으로 생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성매매피해자와 성매매 알선 대상 청소년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및 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청소년을 공동하여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공범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반면, 피고

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2심

[피고인 C]

원심은 피고인 C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후 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며 동시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제기 기간 내 항소를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고, 상소권회복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항소심인 이 법원은 새로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새로운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판결하였다.

사례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7. 선고 2021고합9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12. 선고 2022노496 판결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폭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17세)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고, 피해자에게 18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한 것을 비롯하여, 이후 모두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조건만남 과정에서 휴대폰을 도난당한 후 귀가한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조건만남 알선에 차질이 생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모두 2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이 게시한 조건만남 관련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성매매수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20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함으로써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D는 조건만남 게시글을 통하여 만난 여성 E에게 700,000원을 지급하고 항문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주문

○ 1심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아이폰)를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아이폰)를 몰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3호(아이폰)를 몰수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를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심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아이폰)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자신에게 심리적·정신적으로 의존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권유나 계약 형식을 통해 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고, 총 31회에 걸쳐 이를 알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폭력까지 행사하였다. 알선 횟수가 수백 회 이상으로 보이고, 그 기간 또한 5개월 가량으로 매우 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궁 등에서 피가 흐르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산부인과를 다니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중단시키기는 커녕 계속 그 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알선 대가도 대부분 차지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자궁경부암 이형성증의 질환이나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여러 측면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다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에 불과하고 수개월 간의 복역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혈중 철제수술을 받아 지속적인 치료도 필요한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B 또한 피해자가 심리적·정신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 피고인 A의 알선행위를 이어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 형식을 빌미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고, 총 27회에 걸쳐 이를 알선하였다. 실제 알선행위를 한 횟수가 매우 많고 그 기간 또한 길며, 피고인이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수익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여러 측면에서 피고인 또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아직 만 19세에 불과하고 수개월 간의 복역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2회 알선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알선 횟수가 2회에 그쳤고, 금전적 이득 또한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D는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성매매를 저지른 것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1번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사례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7. 6. 선고 2021고단2018, 2021고단 2052(병합), 2022고단56(병합)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1. 8. 선고 2022노3919 판결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상해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

○ 2021고단2018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매수자 E(남, 46세)가 아동·청소년 F(13세)와 성매매를 한 것을 빌미로 E를 협박하여 150만 원을 받아내기로 모의하고, E의 집에 찾아가 계속 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F와 공동하여 E를 공갈하여 피해자 E로부터 15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E가 갑자기 "살려주세요."라고 큰소리를 치고, 그 소리를 들은 아파트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보내고, 제1항 기재 성매수자 E이 성매매를 제안하자, 모텔에 아동·청소년인 F(13세)를 보내 성매수자 E로부터 성관계의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관계를 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 2022고단56
[피고인 C]
피고인 C는 실종아동인 F가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F와 함께 지냈다. 피고인 C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하였다.
피고인 C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접속하여 G에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 메시지를 보고 연락온 G와 성매매 비용, 장소 등을 정한 다음, 아동·청소년 F를 내보내 G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G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해 총 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F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은 실종아동인 H(14세)가 가출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

하지 아니하고 H와 함께 지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보호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A와 D와 함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H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A, D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H에게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 메시지를 보고 연락이 온 I와 성매매 비용, 장소 등을 정한 다음, 주차장에 아동·청소년인 H를 내보내 I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I의 승용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H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주문

○ 1심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 2심

[피고인 A, 피고인 B]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C]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에게 4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공동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 B]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상해죄를 저지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공동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C]

1심에서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공동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전과와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으나, 2심에서는 피고인은 2022년 수원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시 각 죄는 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D]

피해자 H에게 용서받지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 6. 24. 선고 2021고합360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노649 판결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특수상해
감금
폭행
감금방조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18세)를 폭행 및 협박하여 약 6개월 가량 피해자로 하여금 총 13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 성매매 대금 39,060,000원을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피고인들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성년이 된 피해자를 협박하여 약 2개월가량 피해자로 하여금 총 20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 성매매 대금 9,100,000원을 피해자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받았다. 또한,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합의금을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받은 3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4,560,500원을 갈취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 및 손에 2도 화상 등 상해를 가하였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가 성매매 하는 장면을 감시하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C로 하여금 문 앞을 막게 시키는 등 감금하였다.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친언니 B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방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 앞에 앉아 있거나, 같이 옷장에 들어가 숨어 있거나, 피해자가 편의점을 갈 때 따라가는 방법으로 B의 감금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주문

○ 1심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7,571,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88,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47,571,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피해자를 도구처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해진술을 번복하게 만들어 처벌을 피하려고 하였다. 다만, 2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정의 피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여러 차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친연인인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협박, 감금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감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의 감금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사례 21

대구지방법원 2022. 10. 28. 선고 2020고합369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3. 5. 10. 선고 2022노492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도6904 판결

사건명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상해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모텔에서 가출한 피해자 D(사건 당시 13세)와 E, F 등과 함께 머물면서 1일 평균 약 4~5회씩에 걸쳐 아동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는 약 1주일간 어플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린 후 피해자 D로 하여금 글을 보고 연락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약 4~5회씩에 걸쳐 아동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는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약 1~2주간 1일 평균 약 4~5회에 걸쳐 아동인 D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였다.

주문

○ 1심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 2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 3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B, C는 업으로 13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는 2019년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여러 차례 소년보호 사건 송치처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는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알선행위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만 15세의 어린 나이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피고인 C는 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check point

- **사례 17** 아동·청소년 및 지적장애 여성에게 ‘공모하여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피고인 3명 모두에게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조직적·계획적·반복적 알선 범행과 범행 과정에서의 폭력성, 그리고 대상의 취약성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하다는 이유를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자 취약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 **사례 18**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 피해자(17세)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으며, 채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리며, 폭행까지 행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를 입어 피해가 상당하나,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는 집행유예, 벌금형에 그쳤다. 이는 피고인들이 공통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 **사례 19** 피고인들은 실종된 아동·청소년 피해자(13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함께 지내며,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아동·청소년 피해자 F를 공갈의 도구로 활용하여 성매매하게 하였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자를 공갈 협박하였으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사례 20**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수개월에 걸쳐 폭행 및 협박을 일삼으며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A는 끊임없이 피해자를 심리적 지배하에 두며 피해자를 회유 및 압박을 하여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진술을 반복할 것을 강요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었다.
- **사례 21** 피고인들은 가출한 13세의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알선하였고,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의 연령도 만 15세로 어린 나이였다는 점을 참작하였으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피해자 변호사 Comment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점은 탈가정·실종·주거 불안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숙식 제공, 채무 또는 정서적 관계 형성을 미끼로 접근하여 성착취를 구조화한 뒤, 장기간 심리적 지배를 통해 피해자가 문제 제기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통제했다는 점이다. 특히 사례 20에서 보듯,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으로 종속시키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까지 개입해 진술 반복과 처벌 불원 의사를 강요하는 등 관계 지배형 성착취의 전형적인 양상이 드러난다. 이러한 유형에서 일부 공범들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친 점은, 착취 체계가 개인이 아닌 네트워크와 역할 분담을 통해 작동한다는 범죄 구조를 양형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사례 21처럼 피고인 역시 미성년자인 경우가 존재하더라도, 연령만을 이유로 감경하는 것은 성적 지배와 강제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로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는 관계 지배가 발생한 경우 미성년자 가해자에 대해서도 실질적 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조사 환경 조성, 피해자의 생활·주거 안정 지원 등 피해자의 진술 독립성과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가 필수적이다. 형사 절차 이후에는 손해배상 청구, 심리치료 및 자립 지원으로 피해 회복을 연계하는 통합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2022-2024년, 다시함께상담센터 활동 중심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판례집

II-2

형사 - 성인

1 성매매 상황 속 형사사건	91
2 관련 법률	93
3 판례분석	103
1) 기소	103
2) 피소	134

II-2 형사-성인



1 성매매 상황 속 형사사건

변호사 박숙란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숙란

성매매피해 현장은 성매매피해뿐만 아니라 중대범죄, 복합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2022.~2024. 센터에서 지원한 사건의 판결에서도 알 수 있다. 성매수피해뿐만 아니라, 강간치상피해, 준강간피해, 강제추행 피해, 사기 피해, 강요피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피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피해, 절도등이 있었다.

또한 2022.~2024. 센터에서 지원한 사건의 판결에서 성매매알선 또는 강요행위로 기소된 사건은 징역형을 받았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던 것으로 보아, 판결의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으나, 아동·청소년이 성착취피해를 입은 사안까지 포함하였던 사건,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사건, 범죄수익이 1억 원이 넘었던 사건, 피해자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사건,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사건, 광고 후 알선영업행위였다. 이 중 징역형뿐만 아니라 추징을 한 사안이 있었는데, 몰수추징은 성매매알선강요업자들에게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주는 것으로 성매매알선강요행위의 근절을 앞당길 수 있어 적극적인 몰수 추징에 대한 판결이 필요하다.

2022.~2024. 센터에서 지원한 사건의 판결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 법률위반(성매매)으로 처벌받은 4건이 있었는데, 모두 벌금형 판결을 받았다. 이는 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이 성매매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구분하는 데서 성매매피해자가 스스로 피해자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이며,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탈성매매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심지어 성매매피해자가²¹⁾ 경찰관의 함정수사로 인해 성매매 광고로 처벌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성매매 광고에 포섭되는 사례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일 뿐 아니라, 1심에서는 무죄선고, 항소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현재 대법원 소송계류 중이다. 수사기관이 성매매알선강요등업자나 성구매자를 수사하지 않고 성매매피해자를 겨냥하여 수사하고 있으며, 이에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림으로써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의 보호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성매매피해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되길 바라본다.

21) 현행법상 성매매피해자뿐만 아니라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도 포함한다.

더하여 성매매피해자가 성매매가 전제된 선불금을 받고 성매매알선강요등업소에서 사정에 의해 위 업소에서 일하지 않고 성매매알선강요등업소에서 이탈한 경우 사기 유죄로 선고된 사례가 있는데, 이는 성매매알선강요등업소에서 성매매알선강요등을 당한 이후에야 사기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불법행위인 성매매알선강요등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것이다.

2 관련 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약칭: 성매매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교행위
 -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 다.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약칭: 성매매처벌법]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지배·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한한 경우
2. 다른 사람을 고용·감독하는 사람,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㉒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 성매매의 유인·강요 수단이나 성매매 업소로부터의 이탈방지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여야 한다.

㉓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나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이 무효라는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

㉑ 외국인여성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신고한 경우나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수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까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명령 또는 같은 법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 [약칭: 성매매처벌법]

제51조에 따른 보호의 집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해당 외국인여성의 인적사항과 주거를 통보하는 등 출입국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법경찰관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한 때.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 등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법 제245조의8에 따른 재수사요청이 없었던 경우(재수사요청이 있었으나 그 재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송치요구가 없었던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기간 만료일까지 같은 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었던 경우로 한정한다.

2.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공소를 제기한 때

㉔ 검사는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성매매피해 실태, 증언 또는 배상의 필요성, 그 밖의 정황을 고려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를 일시해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㉕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보호의 일시해제를 하는 기간에는 해당 외국인 여성에게 지원시설 등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㉖ 수사기관은 외국인여성을 성매매피해자로 조사할 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㉗ 성매매피해자인 외국인여성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배상 명령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을 준용한다.

제18조(벌칙)

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㉒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한 사람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㉓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약칭: 성매매처벌법]

- 3. 삭제 <2013. 4. 5.>
-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제19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제20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할 목적으로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사람
 - 2.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한 사람
 - 3.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사람
- ②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업으로 제1항에 따른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벌칙)

-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약칭: 성매매처벌법]

제22조(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23조(미수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예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삭제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89조(인신매매)

- ①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④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거나 매매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사람도 제3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7조(명예훼손)

-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사기)

-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8조(준사기)

-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판례분석

2022~2024년 3년동안 센터는 성인 법률지원의 일환으로 총 57건의 경·검 수사지원과 38건의 재판 소송 지원을 진행하였다. 본 판례집에서 판결선고까지 진행된 건의 사례 중, 30건(기소 22건, 피소 8건)의 판결 내용을 담았다.

1) 기소

2022~2024년 3년동안 판결까지 이루어진 성인 성매매피해자 기소사건 28건 중, 아래 22건의 판결 내용을 담았다.

[성매매 및 복합피해(강간치상, 준강간, 강제추행, 사기, 성착취물 이용범죄, 스토킹, 절도) 17건, 성매매알선·강요 5건]

(1) 성매매 및 복합피해

본 센터에서 3년간 법률지원 한 사건 중, 성매수자가 여성에게 추가 범죄를 가하여 기소된 사건은 총 17건이었다. 추가 범죄의 주요 혐의는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사기, 성착취물 이용범죄, 스토킹, 절도' 등이었다.

① 성매매 및 강간/준강간 (2건)

피고인이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약속하여 만난 뒤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강간'한 사건 1건,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준강간'한 사건 1건으로 확인되었다. 2건의 피고인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판례 요약

사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고합519 판결

사건명

강간치상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차례 성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유사성행위 이상의 행위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여러 번 당부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사성행위를 받기로 하고 만났으나, 유사성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저항함에도 피해자를 누른 채로 억지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정신과적 진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도록 하였다. 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제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형을 정했다.

사례 2

인천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1고합6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18. 선고 2022노3063 판결

사건명

준강간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들어간 다음 항거불능 상태로 누워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하였다.

주문

○ 1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2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법원의 판단

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해 잠든 것을 빌미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겪도록 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2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후 원만히 합의하였고, 처와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판례 분석

check point

- 사례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만 할 것이라 반복적으로 약속하였으나, 돌연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과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공소사실 중 '강간'을 '강간치상'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강간 과정에서 발생한 PTSD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기본 범죄사실(강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 사례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성매매한 경험이 있었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며 지속적 관계 유지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가 성매매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건강 문제로 이를 거부하자 단순히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다시 만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만남 자리에서 게임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과도한 음주를 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신체를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강간한 후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도주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대화 내용, 연락처 등 정보를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

피해자 변호사 Comment

사례 1 판결의 경우 성매매 피해 현장에서는 더 큰 중대범죄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소견서와 진료확인서를 증거로 하여, 강간 피해를 입은 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상해로 인정한 점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결이다. 위 판결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3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을 하였는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집행유예 판결을 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사례 2 판결의 경우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저장된 피고인의 연락처를 삭제하고 채팅 어플리케이션 대화 내역 삭제를 시도하였다. 더하여 1심 재판 때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준강간의 고의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하였으며, 합의조차 시도하지 않아 징역 2년 형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양형에서는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으로 징역 2년 6월~5년이나 선고형은 2년으로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2심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법원은 그 형량에 있어 법원에서는 징역형의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리는 것이 대부분인데, 피해자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범죄의 중대성이 클 경우 센터에서 실형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㉔ 성매매 및 강제추행 (1건)

피고인이 성매매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기소된 사건 1건이며, 이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판례 요약

사례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고단583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22. 선고 2023노1229 판결

사건명

강제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매수자이며, 피해자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셨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팁으로 10만 원을 준 바 있다. 이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모텔을 가게 되었으며, 모텔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강제추행하였다.

주문

○ 1심
피고인은 무죄.

○ 2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유흥종사자인 피해자를 만난 점, 피고인이 일행이 떠난 후 피해자와 상당히 긴 시간 단둘이 방 안에서 술자리를 가진 점, 피고인은 그 대가로 유흥주점에 상당한 돈을 지급하였을 것이고 그 중 일부는 피해자의 뉘인 점 등 피해자의 직업을 이유로 피해자의 증언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무죄 판결하였다.

판례 분석

check point

○ **사례 3** 피해자는 사건 당시 '강간미수'로 신고하였고, 해바라기센터의 도움을 받아 증거 채취를 하였다. 그러나 음부에서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 혐의가 '강제추행'으로 변경되었다. 피해자는 소위 '유혹접객원'으로 일했을 뿐이며, 접객을 빌미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추행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주와 성매수자 사이에 금전이 오갔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피해자가 돈을 받고 동의한 것처럼 해석하는 편견을 보였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매우 문제적이다.

피해자 변호사 Comment

사례 3의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이후 바로 112신고를 하였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입, 목과 가슴에서 피고인의 DNA가 확인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 정신적 충격으로 아예 위 유희주점에 가지조차 못하였던 것으로 피해자의 뺨을 받지조차 못한 상황에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는 바, 이는 유희종사자에 대한 편견, 성매매피해현장에 대한 몰이해 등이 작동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③ 성매매 및 사기 (11건)

성매수자 피고인에 의한 사기 사건은 총 12건이었으며, 이 중에는 한 명의 피고인에게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정식재판'으로 공판이 진행된 사건은 11건(약 92%)이며, '약식기소'된 사건은 1건(약 8%)이었다.

정식재판 11건 중 7건(64%)은 '징역형', 2건(약 18%)은 '집행유예', 2건(약 18%)은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약식기소 1건은 '벌금형'(벌금 액수 미파악)이 선고되었다.

판례 요약

사례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1고단463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2. 선고 2022노107 판결

사건명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들을 상대로 소위 '스폰(조건만남)' 명목으로 금품 등을 편취할 것을 마음 먹은 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월 4~5회 만나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해주겠다"며 '스폰'을 제안하고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스폰'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품 등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스폰'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스폰'을 빌미로 함께 59,248,4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주문

○ 1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27,695,4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3,550,000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4,42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32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A, F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 2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범행 횟수도 매우 많은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례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18. 선고 2021고단61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노4138 판결

사건명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월 4번 성관계 직전까지 가는 조건으로 한번 만날 때마다 현금 75만원 총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글을 보냈고 이후 "성관계를 하면 월 4회 600만원을 주고 스폰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약속대로 화대를 지급하고 스폰서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모텔에서 2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주문

○ 1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2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함,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사례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4. 선고 2022고단3366 판결

사건명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관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성관계 대가로 2회에 4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총 2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회 성교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례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5. 선고 2022고단196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2노1931 판결

사건명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들을 상대로 소위 '스폰(조건만남)'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은 후, '고액의 조건만남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하며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큰 돈을 송금 하면 조사가 들어오니 거래기록에 필요한 150만 원을 먼저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일정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고액의 조건만남 비용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15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651,60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주문

○ 1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에게 1,300,000원을 지급하라.

○ 2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스폰(조건만남)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며 다수의 여성에게 접근하여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 기망의 내용과 수단이 적극적이고, 범행기간이 길며, 편취액의 규모도 크다. 피해자들이 느낀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사례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1. 30. 선고 2021고단387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4. 7. 선고 2022노4458 판결

사건명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SNS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스폰서를 제안한다며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받으시는 조건으로 만나서 시간보내는 겁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다음 피해자를 소개 받은 것처럼 1인 2역 행세하며 피고인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자로서 피해자에게 연예계 활동을 시켜주고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총 2회 성관계하고 약속한 금원을 주지 않아 그 대가인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주문

○ 1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2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 피하다.

사례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9. 선고 2022고단6192 판결

사건명

사기

범죄사실

1. 금원편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폰'을 제의하면서 '월 5회 만남에 1,000만 원을 주겠다, 내가 돈을 보내주려면 둘 간에 거래한 내역이 있어야 하니 지금 네가 100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내일 아침에 200만 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재산상 이익편취
피고인은 '내일 아침에 200만 원을 보내주겠다. 우리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게 그냥 입으로만 해보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며, 피해자와 구강성행위 및 성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으로 2,03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사례 10

(원심판결)

-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2고단1009 판결 및 2022초기754 배상명령신청*
 -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 9. 2. 선고 2021고단912, 2064, 2022고단588(각 병합) 판결 및 2021초기301, 644 배상명령신청
 -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1. 29. 선고 2022고단2349 판결
 -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3고단96 판결 (항소심)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노738*, 2022노1150, 2022노1254, 2023노254(각 병합) 판결 및 2023초기171 배상명령신청

사건명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허위의 투자 수익 내역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한 주식투자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들어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포함한 만남을 4회 가지면 합계 8,000,000원을 대금으로 지급하겠다. 남자가 호텔을 예약하면 추후 강간으로 신고당할 수 있으니 피해자에게 결제하면 나중에 돈을 줄 때 함께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성관계를 제공받고도 지급하기로 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호텔비용 등 1,084,479원을 대신 결제하게 한 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084,47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주문 ○1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2심
원심판결들(다만, 제1,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관련 부분은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당심 배상신청인 D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주거침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2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범행기간과 수습 차례가 넘는 범행횟수, 피해규모(합계 190,000,000원 상당)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한다. 피고인은 다액의 편취금을 자신의 생활비나 다른 개인 사업 용도로 사용하였으면서도, 자신의 여자친구와 합의한 것을 제외하면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없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게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사례 11

- 인천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2고단4571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2노4086 판결

사건명 강요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일수 소개를 해달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오픈 채팅방에서 가상의 인물을 가장하여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자를 소개해주겠다고 하고, 피고인은 다시 스스로를 사채업자로 소개하며 피해자에게 대출금의 선이자로 15%를 지급하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당시 건네받은 성관계동의서, 대출계약서, 피해자의 부모와 지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가 적혀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돌려달라고 요청받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든 가상의 인물과 짜고 피고인을 상대로 대출 사기 범행을 하려다 일이 잘못되었으니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협박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술을 마시며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주문 ○1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의 판단

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와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단하였다. 2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에 관한 동종 전과가 있으나 편취금액이 적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사례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8. 선고 2023고단429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노746, 2023노2272(병합),
2024노7(병합) 판결

사건명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재력이 행세를 하였다. 계속하여 '3개월 동안 월 6회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오피스텔도 마련하여 주겠다'는 내용으로 이른바 스폰서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3회 성관계를 하고도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약 21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약 4,205,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주문

○ 1심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 2심
원심판결들(제2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인용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법원의 판단

1심 재판부에서는 양형의 이유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처자 범행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2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편취한 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 B, M, K, Y에게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의 불리한 정황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R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Y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사례 13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1. 17. 선고 2023고단1643, 2022고단
1389(병합)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4노429 판결

사건명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스폰'을 제시하며 담보 명목으로 돈을 먼저 받아내어 스폰서 관련 비용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합계 1,896,000원).
이외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한 뒤, 통신비를 부담시킴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합계 3,654,340원), 대출금 대위 변제를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해당 비용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합계 25,123,500원).
피해자 B에게 피고인 소유의 상가를 증여해줄테니, 부동산 비용과 세금을 부담하라고 거짓말하여 고액의 금액을 여러 차례 송금받았으며(합계 48,620,000원), 피고인 소유의 비트 코인을 증여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증여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여 휴대전화 기기대금 및 통신요금을 부담시켰다(합계 3,353,000원). 또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합계 56,434,427원).

주문

○ 1심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A에게 물적 피해 30,673,840원을, 배상신청인 B에게 물적 피해 56,014,427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상당 기간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일삼았고, 궁박한 상태에 빠진 피해자들의 처지를 이용한 기망의 방법과 내용도 매우 불량하며 그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8,700만 원을 넘는 큰 액수인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을 개선하지 않고 재범한 점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례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4고단8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4노898 판결

사건명

사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데이트를 해 주면 서울에 있는 24평 새 아파트 명의를 이전해 주고, 월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다.

카페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마친 후, 피해자의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아파트를 보여주겠다고 하며 함께 이동하여 집 안을 둘러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향이 맞는지 테스트를 해보겠다'라며, 유사성행위를 요구하였고, 유사성행위 후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구강성교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다음 날 4,000만 원으로 올려주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락을 차단해 버렸다.

주문

○ 1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2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법원의 판단

1심: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거액의 성매매 대금을 약속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렇게 성관계를 맺은 다음에는 약속된 액수의 2배를 내일 지급하겠다는 말로 현장을 이탈하고 피해자의 연락을 차단하여 성매매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2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면서도 공소사실 인정, 가족들이 피고인의 교화에 함께 힘쓰겠다고 다짐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고려, 원심에서 500만 원 공탁, 당심에서 추가로 500만 원 형사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변경은 새롭게 양형에 참작해야 하고,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판례 분석

check point

- **사례 4**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 대상 피해자는 총 20명이었고, 이 중 센터의 지원을 통해 고소에 이른 피해자는 총 8명이었다. 이 가운데 1건은 별건(사례 7)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성행위 시 거액의 스폰금을 지급할 것처럼 다수의 여성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성착취하였다. 피고인은 스폰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면서, 피해자에게 선금을 보내 이체기록을 남겨야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속여 추가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계획적·반복적·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 **사례 5**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그러나 사건 발생일인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불과 2주 전(2020년 7월),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사기 범죄(아동·청소년-사례 14)를 저질렀으며, 센터에서는 두 내담자 사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2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피고인이 유사·동종 범죄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례 6** 해당 사건은 본래 구약식으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내담자와 센터는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 정식재판이 청구되었다. 정식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합의를 시도했으나 내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다만 이후 피해자 가족이 피해자를 설득하면서 합의가 성립되었고, 이 점은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사례 7** 피고인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상당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에게 '스폰'이라는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거액을 편취하였다. 사례 4의 피해자들이 선제적으로 고소함에 따라 피고인은 2021년 8월 구속되었으며, 이후로는 사례 7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도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구속 이후 경찰서를 통해 센터로 다수의 피해자 의뢰가 접수되었는데, 그중에는 직접 만나지 않았거나 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금전적 피해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스폰 성매매'를 약속하거나 이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경제적 취약성을 악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잠적한 점에서 그 범행의 악질성은 변함이 없다.
- **사례 8**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했다가 성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기소유예 처분받은 바 있으며, 1인 2역 행세를 하면서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착취한 후 금원을 주지 않는 사기 행각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
- **사례 9** 피고인은 2021년 사기죄로 징역 2년, 2022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해당 피해자에게도 '스폰'을 제의하며 성행위 하였으나 약속한 금원을 주지 않았다. 사례 4, 사례 7을 포함하여 총 20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착취하고 금전을 편취하여 매우 악질적인 사례이다.
- **사례 10**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속여 성착취하고 금원도 편취하였다. 1심에서는 징역 6월이었으나, 2심 재판부에서는 여러 사건이 병합되면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 **사례 1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 및 부모, 지인의 인적사항 등을 받아내어 이를 빌미로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며 성착취 하였다. 피고인은 투병 중인 처가 있음을 드러내며, 2심에서 집행유예 받았다.

- **사례 12**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 받은 바 있으나, 동종 범죄로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2심에 가서 다른 사건과 병합되면서 본 센터에서 지원하는 내담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사례 13** 해당 사건 이전 2020년 경에 피고인으로부터 성매수 사기 피해를 당한 2명의 피해자가 법률지원을 문의하였으며, 한 내담자는 사건을 진행하였고, 한 내담자는 사건 진행하지 않아 종결된 바 있다. 본 사건의 피해자 법률지원 중, 다른 피해자가 본 센터로 법률지원 문의를 하여 조력하고 있다.
- **사례 14**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교화에 힘쓰겠다고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피해자 변호사 Comment

사례 6 관련하여 100만 원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낮았던 이유에 대해 살펴보니, 양형의 이유에서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와 합의, 판결이 판정된 판시죄(2021. 9.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와 형법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등을 이유로 하였다. 판결에서는 성매매 대가 사기의 경우 제시한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보고 있는데, 사례 6의 경우는 2회 성매매 대가 금액으로 400만 원을 제시하였는 바, 400만 원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사례 9의 경우 1회 관계 대가로 200만 원을 제시하였는 바, 200만 원 재산상 이익으로 보고 있다. 또한 위 판결들에서 '스폰(조건만남)'으로 적고 있는 것은 특이하며, 스폰을 명목으로 성매매피해자들에게 접근 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이 다수 차지하고 있었다.

㉔ 성매매 및 성착취물 이용 범죄 (1건)

피고인이 성매매를 하기로 하여 만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건은 총 1건이었으며, '집행유예' 선고 되었다.

판례 요약

사례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3. 14. 선고 2023고단1347 판결**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 피해자 B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볼펜이 주머니에 꽂힌 피고인의 상의를 옷걸이에 걸어 놓은 뒤, 피해자들의 벗은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각각 촬영하였으며, 다른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벗은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8, 9, 10호를 몰수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볼펜형 카메라라는 장비까지 구입하여 계획적으로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짧은 기간 안에 반복되었다. 동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이다.

판례 분석

check point

○ 사례 15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행위 장면 등을 촬영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 아동·청소년을 성매수하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더 나아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변호사 Comment

판결의 피해자들을 채팅어플로 만나 성매수하면서 불법촬영한 범죄사실에 나아간 점에 대해, 공소장에 '성매매'에 대해서 죄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은 수사 단계에서 성매매 인지수사 방어로 성매매 혐의에 대한 별도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에 대해서는 유리한 정상으로 적시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유포죄가 따로 있음에도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㉔ 성매매 및 스토킹 (1건)

피고인이 성매매를 통해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스토킹을 한 사건 1건이며, '벌금형' 선고되었다.

판례 요약

사례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4고정1240 판결

사건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는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되어 그때부터 피해자와 같이 여행을 가는 등 만남을 가져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그만 만나고 싶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만나고 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동안 소요된 경비를 돌려주거나 아니면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의 판단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 종합하여 이 형을 정한다.

판례 분석

check point

○ 사례 16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후, 센터에서 지원한 사례이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여행 경비 정산을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던 것이며,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행 경비를 정산받기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에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며, 일련의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었으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피해자 변호사 Comment

피고인이 16차례에 걸친 지속적·반복적 스토킹범죄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이 있었던 점이 있었다. 현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는 '㉠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스토킹범죄에 대해 2024. 7. 1. 시행되는 양형기준에 따라 '기본영역 6월 ~1년, 500만 원 ~2,000만 원'인 바, 최하한으로 벌금형 500만 원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성매매 및 절도 (1건)

피고인이 성매매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성매매 대금을 절취한 사건은 1건이며, '집행유예' 선고되었다.

판례 요약

사례 17

수원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2022고단3727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1. 7. 선고 2022노6940 판결

사건명

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매매대금으로 50만 원을 주고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가방에 있던 50만 원이 들어 있던 봉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주문

○ 1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8, 9호를 몰수하고, 증 제12 내지 39호를 폐기한다.

○ 2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였으나,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판례 분석

check point

○ 사례 17 피고인은 성행위 대가로 지급한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성행위 후 6천 원이 든 봉투로 바꿔치기 하고 도주하였다. 피해자는 비단 절도 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 고소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착취물 소지 등 피고인의 여죄도 밝혀질 수 있었다.

피해자 변호사 Comment

1심판결의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절도, 불법촬영, 성매매 등에 대해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는 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비해 낮은 형량으로 검사님이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에서 기각 되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지를 밝힌 피해자의 확인서가 제출되었다.

(2) 성매매 강요/알선 (5건)

본 센터에서 3년간 법률지원 한 사건 중, 성매매를 알선 또는 강요 행위로 기소된 사건은 총 6건이며, 관련 피고인은 10명이다. 성매매 알선자 피고인 10명 중 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4명은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그중 5건의 사례를 담았다.

판례 요약

사례 18

인천지방법원 2021. 8. 26. 선고 2021고단384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1. 11. 19. 선고 2021노3242 판결
대법원 2022. 3. 4. 선고 2021도16908 판결

사건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숙식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F(20세)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며, 총 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외 가출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I(14세), 피해자 J(14세)에게 '숙식을 제공해주겠다, 성매매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유혹하고,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주문

○ 1심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 2심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3심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A, C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 I와 합의하였다.

사례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고합43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4. 15. 선고 2022노25 판결

사건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대출금 및 휴대전화 요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면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성매매를 하면 마치 돈을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성매수자를 모집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주문

○ 1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2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1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6회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포함된다. 피고인은 최종 징역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 단지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례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1고단648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4. 선고 2022노2835 판결

사건명

의료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직업안정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무등록 안마 업소를 친누나, 전 부인의 명의를 빌려 개업하였다. 또한, 안마와 관련된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상의 손님들에게 안마 후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미리 고용해 둔 성매매 여종업원 N으로 하여금 안마 행위 및 손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구인 광고를 올려 성매매 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였다.

주문

○ 1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8,722,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2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1,720,66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운영기간이 아주 장기간은 아닌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사례 21

부산지방법원 2023. 2. 17. 선고 2022고합619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3. 5. 4. 선고 2023노135 판결

사건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준사기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에게 총 146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한 다음 그 대금을 가로채고, 피해자에게 '돈 관리를 해 주겠다'라며, 총 40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8,469,228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만일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 마치 헤어지거나 죽을 것처럼 행세하는 등 심리적 육체적인 지배행위를 하여왔다.

주문

○ 1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4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최대한의 엄벌을 탄원하였다.

사례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고단403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3. 선고 2022노2537 판결

사건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다시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종전 성매매알선 범행 당시 성매매 여성이었던 B를 찾아가 성매매를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유인하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성들을 B와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받아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주문

○ 1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990,6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법원의 판단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못하고 출소한 지 약 5개월 만에 유사한 내용 및 방법의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성매매 여성에게 약 11개월 간 하루 2-3건의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하루 20-30만 원 이상 성매매 대금을 받았음에도 성매매 여성에게는 하루 2-3만 원 정도만 분배한 바 이는 착취에 가깝다. 영업 기간이 길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성매매 여성과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판례 분석

check point

- 사례 18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면서도, 가출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인되어 이른바 '가출팸'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성매매 알선의 대상이 되는 착취 상황에 놓였다. 이후 '가출팸'에 아동·청소년까지 유입되어 피해자와 동일하게 성매매 알선이 이루어지자, 피해자는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드러났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강압·협박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고, 경찰은 피해자를 성매매 행위자로 인식하여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하였다. 이는 성매매처벌법이 지적장애인을 명확히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실무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행위자로 취급한 대표적 문제 사례라 할 수 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나, 여전히 피해자에 대한 불합리한 결과이다. 한편 피고인들의 범행은 지적장애인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중대한 착취 범죄임에도, 법원은 징역 1년형만을 선고하여, 형량이 사회적 인식 및 피해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것으로 평가된다.
- 사례 19 피고인은 사기죄,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등 다수의 중대한 범죄 전력(총 11회, 그중 징역형 6회)을 가진 상습 범죄자였다. 특히 2021년에는 장애인 위계 등 간음, 장애인 강제추행 등 중대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범행 전력이 반복되고 있었다. 형 집행을 마친 이후에도 피고인은 지적

장애 여성을 속여 채무를 지게 만들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성매매를 해야 한다며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강요·알선하는 착취 구조를 만들었다. 이러한 범행은 누범기간 중 단지 1개월 만에 다시 이루어진 것으로, 재범 위험성과 범행의 구조적 악질성이 매우 높았다. 그럼에도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이는 장애인 대상 반복적 착취 범행의 중대성, 누범기간 재범, 상습 성매매 강요 구조 등을 고려할 때 형량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문제적 판결로 평가된다.

○ **사례 20**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테라피스트 모집' 광고를 보고 지원했으며, 면접 시 "한 달간 전문 마사지 교육을 받으면 마사지 업무만 하게 된다"라는 설명을 듣고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교육과정에서 업주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성매수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방법을 배우라며 강요하는 등 사실상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한 착취적 교육을 실시하였다. 피해자는 교육 중 피해를 입고 더 이상 출근하지 않은 뒤, 본 센터의 지원을 받아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업주를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가족 명의를 이용해 불법 업소를 운영하며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법원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이는 성매매 알선 행위를 사실상 '업으로' 영위한 점에 비해 현저히 가벼운 처벌이라는 문제가 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업소 관련자 4명이 추가로 기소된 것으로 보이나, 해당 인원들의 재판 및 처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모니터링이 불가능했다는 점도 한계로 남았다.

○ **사례 21** 피고인은 2020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년에 가석방되었으나,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거액의 성매매 대금을 편취하는 등 취약성을 노린 중대 범죄를 반복하였다. 이 사건은 장애 여성 대상 성매매 강요와 사기 범죄가 결합된 중대한 착취 범죄일 뿐 아니라, 피고인의 명백한 재범 위험성까지 확인되는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형만을 선고하였다. 이는 누범기간 재범, 심한 지적장애 여성 대상 착취, 성매매 강요 및 편취라는 죄질의 무게를 고려할 때, 법정형 범위 내에서 충분히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적 판단으로 평가된다.

○ **사례 22** 피고인은 2016년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형 집행을 마친 뒤에도 누범기간 중 동일 유형의 범죄를 반복하였다. 이는 이전 처벌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재범 방지 노력 없이 상습적으로 착취 범행을 지속해 온 점을 보여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영업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었고, 범죄수익 또한 상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범행의 구조적·조직적 성격과 죄질의 중대성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판 진행 중에도 피해자(내담자)에게 끊임없이 그루밍이 의심되는 편지를 보내왔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회유로 인하여 피고인의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 처벌불원, 선처탄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가족의 선처 탄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2년형만을 선고하였다. 이 사례 역시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누범기간 중 반복된 성매매 강요·알선, 상당한 범죄수익, 범행의 장기·상습성에도 불구하고 판결이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문제적 판단으로 평가된다.

피해자 변호사 Comment

사례 21의 경우 지적장애인으로서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에게 '돈 관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2021. 11. 6.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8,469,228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준사기로 처벌하였으며, 성매수자들이 지급한 성매매 대금 합계액을 22,045,000원을 추징하였는 바, 범죄수익을 추징한 의미있는 판결이다.

사례들 전반을 종합해보면, 상습성, 누범기간 중 재범, 피해자의 취약성(아동·청소년·지적장애인 등), 그리고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강요를 사실상 '업(業)'으로 운영한 구조적 착취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양형 과정에서 충분히 가중 요소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된 문제가 확인된다.

형법과 성매매처벌법은 취약계층에 대한 착취, 계획적·지속적·조직적 범행, 그리고 누범기간 중 재범 등을 명확한 가중 사유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실제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형식적 반성, 가족의 탄원, 초범 여부 등 개인적 정상 관계가 과도하게 참작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구조적 착취 범죄의 특성을 간과하고, 피해자가 겪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와 사회적 파급력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사례들에서 보듯, 피해자들이 대부분 지적장애 여성 또는 아동·청소년 등 매우 취약한 대상이며, 피고인 들은 이를 명백히 인지하고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은 일반적인 성매매 알선 범죄보다 훨씬 무겁다. 그럼에도 양형은 법정 상한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일부 사례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사회적 기대 수준 및 보호법익의 중요성에 부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 알선·강요를 일회적 범행이 아니라, 조직적·상습적 영업행위로 수행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요구됨에도, 현행 판결들은 이러한 구조적 범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착취 산업을 근절하기 위한 일반예방 효과를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본 사례군은 취약계층 대상의 반복적 성매매 착취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실효성 부족을 드러내며, 향후 입법적·사법적 수준에서 가중처벌에 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상습적·조직적 착취 범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2) 피소

2022~2024년 3년동안 판결까지 이루어진 성인 성매매피해자 피소사건 10건 중, 아래 8건의 판결내용을 담았다.

[성매매 4건, 성매매 광고 1건, 사기 2건, 공갈 1건]

(1) 성매매 (4건)

여성이 성매매 행위자로 입건되어 기소된 사건은 총 5건이었다. 이 중 4건은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피고인(내담자) 5명 중 4명은 '벌금형', 1명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1건은 약식기소로 처리되어, '벌금형(150만 원)'을 받았다.

판례 요약

사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31. 선고 2022고단84 판결

사건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피고인 A(내담자)는 B(성매수자)를 만나 "커피 한 잔 할 수 있냐, 연애 한 번 하자"며 말을 건넨 B와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사례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9. 13. 선고 2023고정420 판결

사건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11만 원을 지급받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법원의 판단 (판단 내용 없음)

사례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3고단2004 판결

사건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 '줄톡'을 통해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여 만난 남성과 1회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교부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성매매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범죄 전력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례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고단663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31. 선고 2023노2887 판결

사건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성매매 업소의 여종업원이다.
피고인 A는 불상의 손님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합계 36만 원을 받고 2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는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고 1회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주문

○ 1심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20호, 제 21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증 제18호, 제 19호를 각 몰수한다.

○ 2심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에 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례 분석

check point

- **사례 1** 피고인은 종로 인근에서 길거리 성매매를 하던 고령 여성으로, 모텔에서 성매매 중 경찰이 모텔 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하여 현장 사진을 촬영하는 등 증거를 채증한 후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다. 필요 최소한의 증거 수집 원칙에 따라 얼굴이나 신체가 직접 노출되는 방식의 사진·동영상 촬영은 지양되어야 하며, 현행 성매매 단속 관련 수사 지침에서도 이러한 채증은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병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는 고령 여성이라는 취약계층 특성과 불필요한 신체 노출 자료 생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권 침해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 사례는 단속 과정에서 수사 효율과 인권 보호 간 균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문제적 사례로 평가된다.
- **사례 2** 피고인은 휴게텔에서 성매매하였다가 성매수자가 나가자마자 경찰이 들어와 단속되었다. 경찰은 피고인에게 자필진술서 내용을 불러주는 대로 적게 하여 성매매 죄로 입건하였다.
- **사례 3** 피고인은 과거 조건만남을 통해 단속되어 가정법원 위탁상담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후 조건만남을 시도하였다가 경찰로부터 단속을 당하여 성매매 죄로 입건되었다.
- **사례 4** 피고인들은 성매매피해자이며, 성매매 업소가 단속을 당하면서 업주 및 실장, 성매수자 등을 포함하여 성매매 여성들도 단속되어 성매매 죄로 입건되었다.

변호사 Comment

위 사례들은 현행법상 성매매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이분화 하여, 성매매피해자는 불처벌하지만,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여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이는 성매매피해자임을 입증하지 못한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은 벌금형에 처해져 탈성매매보다는 벌금형 납부를 위해 다시 성매매에 유입될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성매매피해자로 불처벌이 안 된다면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있으며, 보호처분을 통해 성매매피해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 탈성매매와 자활에 힘쓰게 해야 할 것이다.

(2) 성매매 광고 (1건)

성매매피해자인 내담자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함정수사를 하는 경찰관을 만나게 되어 '성매매 광고죄'로 입건되어 본 센터에 법률지원을 요청한 내담자는 5명 가량되었다. 이 중 공판까지 진행된 사례는 1건이고, 해당 내담자는 1심 '무죄' 선고되었으나, 2심 '벌금형'이 처하였다. 이는 현재 3심 재판 진행을 앞두고 있다. 구약식으로 '벌금형'에 그친 사례는 2건이다.

사례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4고정117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노3269 판결

사건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대화를 시도하는 불특정인에게 성매매를 제의하는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주문

○ 1심
피고인은 무죄.

○ 2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한 대화명 및 채팅방의 제목은 문언 그 자체로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것이라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미 성매매를 할 의사가 있는 상대방과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비공개 대화에서 성매매 조건 등을 제시한 것을 두고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것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접속할 수 있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매 조건 등을 제시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성매매 처벌법상 금지되는 '광고'행위에 해당하고, 성매매자인 피고인의 광고행위 역시 별도로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벌금형 선고하였다.

판례 분석

check point

○ 사례 5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의 채팅방 제목에 단지 '호텔중'이라는 문구를 작성해 두었고, 이를 보고 1:1의 대화를 건 불상자(위장수사 경찰)에게 자신의 신체사이즈 및 성매매 조건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불상자가 만남을 요구하여 현장에 나갔다가 단속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채팅방 제목과 전송한 메시지 내용에는 성매매를 권유·유인하는 광고성 내용이 없었으며,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 경찰은 피고인이 성매매 광고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불러주는 대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피의자로 입건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범죄 구성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진 문제적 사례로 평가된다.

변호사 Comment

위 사례에서 성매매 광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일 뿐만 아니라, 성매매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이분법은 성매매피해자 등을 범죄자로 처벌하는데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의해 성매매 광고로 기소되고,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 판결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탈성매매를 가로막고 있으며, 성매매 알선 강요 등 업자들에 대해 수사에 집중해야 하는 수사 인력이 성매매피해자 등만 쫓아 수사 입건에 쫓겨 수사 인력의 낭비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다.

(3) 사기 (2건)

선불금 사기로 피소되어 공판 진행된 사건은 총 2건으로 성매매 업소에서 일할 것을 전제로 선불금을 받은 성매매 피해자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하지 않거나 짧은 기간 일을 하고 그만 두어 성매매 업소 업주 또는 관계자로부터 고소당하였다. 1건은 '벌금형', 1건은 '무죄' 선고받았다.

사례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3. 19. 선고 2020고정72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8. 선고 2021노725 판결
대법원 2022. 4. 22. 선고 2022도3693 판결

사건명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내담자)은 피해자에게 선수금을 지급받더라도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알선자)에게 해당 유흥업소에서 여성접객원으로 일을 하겠다면서 우선 선수금 명목으로 215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하며, 총 6회에 걸쳐 37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에 대하여 성매매피해자인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피고인이 공황장애나 우울증의 증상이 악화되어 가족들이 외부 활동을 못하게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고 일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주문

○ 1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을 처한다.

○ 2심/3심
피고인의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이후 실질적으로 일한 날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점, 피고인의 재정상태 역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돈을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차용 경위와 내용을 가족들에게 알려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을 것은 점 등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사례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 11. 16. 선고 2021고정2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1노3873 판결

사건명

사기

범죄사실

피고인(내담자)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선불금으로 400만 원을 주면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에 대하여 성매매 피해자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방에 이틀간 출근하였다가 피해자가 그만 두라고 하여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주문

○ 1심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2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법원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을 당시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다.

판례 분석

check point

- **사례 6** 피고인은 성매매피해자이고, 피해자는 성매매 업소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업소 관계자이다. 피고인은 뇌전증 진단을 받고 건강이 악화되어 근로가 어려운 상태였으며, 여러 차례 일부 금액을 상환한 점 등을 들어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 또는 변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평가되었고, 결국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였다.
- **사례 7** 피고인은 성매매피해자이고, 피해자는 성매매 업소의 업주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통해 선불금을 변제할 것을 전제로 선불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짧은 기간만 일한 뒤 업소를 그만두자 이를 사기라고 주장하며 고소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의해 해고된 것이고, 피고인은 해당 선불금을 사채업자를 통해 이미 변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수사 단계에서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실제로 고소를 취하지 않았으며,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사채업자에게 변제한 사실을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위증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였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선불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변호사 Comment

위 두 사례의 유무죄의 차이점은 성매매 알선 강요업소에서 일을 했느냐의 여부에 따라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매매알선강요등영업행위의 피해를 입어야만 사기에서 무죄가 되는 것은 사법기관이 의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인 성매매알선강요등영업행위를 방조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4) 공갈 (1건)

성매매피해자가 공갈 혐의로 피소되어 공판 진행된 사례는 1건이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사례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8. 선고 2022고단4728 판결

사건명

주거침입
공갈

범죄사실

피고인(내담자)은 피해자(업소 마담)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고,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갈취했다.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초등학교생인 피해자의 딸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했으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은 현재 건강 상태도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례 분석

check point

- **사례 8** 피고인은 성매매피해자이며,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이 일하던 성매매 업소의 마담으로서 성매매를 강요·알선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장기간 해당 업소에서 일하였으나, 출근비·지각비·보건증 비용·결근비 등 각종 명목의 비용이 계속 청구되어 선불금을 갚지 못했고, 결국 피해자에게 다시 선불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후 피고인은 업소에서 일하면서 고액의 이자를 상환하였고, 탈성매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전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장기간의 성매매로 인해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는 등 신체적 피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떼어먹었다는 취지로 주변에 말하고 다니는 등 악질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내용증명을 전달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것이 본건 고소의 원인이 되었다.

변호사 Comment

성매매 알선 강요당하여 자궁경부암까지 앓게 된 성매매피해자가 과거의 피해를 배상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공동 현관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던 점, 사회통념을 넘어서지 않는 분쟁 해결의 방법이었던 점의 여지가 있었음에도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다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 사안이다.

III

민사

1 성매매 상황 속 민사사건	147
2 관련 법률	149
3 판례분석	154
1) 제소	154
2) 피소	164

III 민사



1 성매매 상황 속 민사사건

법무법인 해명, 변호사 박혜원

어느새 변호사를 시작한 지 10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났다. 돌이켜 보면,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다짐했던 초심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두려운 마음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다. 가장 두려운 마음은 주어진 사건들을 그저 사건으로만 대하고 사건의 본질인 사람을 놓치는 것이다. 적지 않은 업무를 하다 보면, 사건에 매몰되기도 한다. 그러다 사건의 쟁점이나 증거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떠올리면서, 나를 믿고 내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이 누구였는지 떠오르지 않을 때 당황스럽고 부끄럽다.

감사하게도 다시함께상담센터와 함께 했던 분들은 한 분, 한 분 모두 떠오른다. 혹시라도 성매매 사실이 알려질까 전전긍긍하셨던 분, 모든 게 더러운 자신 탓이라며 자책하시며 소송을 포기하려고 하셨던 분, 당당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고 용기 내셨던 분, 판사의 냉소, 채권자들의 험한 말에 힘들어하는 나를 오히려 위로해 주셨던 분들 모두 사람으로서 나를 대해줬고, 나 또한 사람으로서 그분들을 대하는 법을 배워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회의 편견은 아직도 높다. 성매매 여성을 비난하거나 경멸하는 시선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돈'의 문제를 다루는 민사재판에서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왜곡된 편향된 시선으로 사건을 보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런 시선에 주눅 들거나 위축될 필요는 없다. 오랜 기간 성매매 피해 여성들과 함께한 다시함께상담센터와 선생님들의 든든한 지원이 있고,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결단을 믿고 현명하게 싸워 이겨내야 한다.

일반적인 민사 대여금 사건의 경우, 대등한 당사자 관계를 전제로 대개는 차용증 등 명확한 처분문서가 존재하고, 금전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등 여러 증거들을 통해 소송의 승패가 정해진다. 하지만 소위 선불금의 경우 성매매 여성과 업주 내지는 전주의 위치는 절대로 대등하지 않다. 차용증 등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설사 차용증 등 서류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업주 내지는 전주의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대로 작성한다. 계좌이체 내역이 존재하지도 않은 경우도 많다. 실제로 금전거래가 없이 그 이전 업소의 선불금조로 채무를 승계하거나 알 수 없는 계산법으로 지각비, 옷비, 이자에 이자, 각종 명목으로 뜯어가는 돈들이 계속 불어나기만 한다. 정말 죽을힘을 다해서 선불금은 물론 이자에 각종 비용들까지 모두 변제하고 업소를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변제를 완료했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건 자체만 보면 법조인으로서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법률전문가는 뜨거운 가슴만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법이라는 도구를 다루어야 한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되,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법 103조 위반, 소멸시효 항변, 공시송달 추완항소, 입증책임에 관한 논리 등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창과 방패를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

최근에는 선불금 채권,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정지, 청구이의소, 추완항소 외에도 성매수자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 소송, 구상금 청구는 물론 형사사건 피해자로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청구 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사안을 검토하고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금번 판례집 발간 또한 그 노력의 일환이다.

2 관련 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약칭: 성매매처벌법]

제1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고소·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제공이 성매매의 유인·강요 수단이나 성매매 업소로부터의 이탈방지 수단으로 이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여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나 성매매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제1항의 채권이 무효라는 사실과 지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에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대부업법

제9조의2(대부업등에 관한 광고 금지)

- ①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효력)

- ①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제8조제2항에 따라 이자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상법」 제54조 및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소송촉진법

제3조(법정이율)

-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음법

제34조(일람출급 어음의 만기)

- ① 일람출급의 환어음은 제시된 때를 만기로 한다. 이 어음은 발행일부터 1년 내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 배서인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② 발행인은 일정한 기일 전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의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시기간은 그 기일부터 시작한다.

제70조(시효기간)

-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어음법

- ㉔ 소지인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1. 적법한 기간 내에 작성시킨 거절증서의 날짜
 - 2. 무비용상환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만기일
- ㉕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그 배서인이 어음을 환수한 날 또는 그 자가 제소된 날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 ㉑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 ㉒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 ㉓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 ㉔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㉕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벌칙)

- ㉑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㉒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㉑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피해자 보호법)

[시행 2025. 10. 1.]

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임)

- 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피해 회복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수사기관의 협조)

- ㉑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㉒ 상담소의 장은 본인 또는 상담소 직원이 성매매, 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방지등을 위하여 업소 및 지역을 현장방문하거나 출입하고자 할 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행정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상담소등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反)하여 지원시설에 들어가게 하거나 제17조제4항의 보호를 할 수 없다.

3 판례분석

2022년~2024년 3년동안 센터에서 총 15건의 민사소송을 지원하였다. 판례집에는 10건의 사례를 담았다. 제소사건은 7건[손해배상 3건, 채무부존재 2건, 청구이의 1건, 구상금 1건], 피소사건은 3건[대여금 1건, 보증채무금 1건, 손해배상 1건]을 선별하였다.

1) 제소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및 후속 행정 절차

사례1은 2018년 있었던 강간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사건이다. 형사1심에서 강간죄 무죄, 형사 2심에서 강간죄 유죄로 법정구속, 판결 확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2022년 12월경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사례2는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고액의 만남비용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약 1억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사기범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이다.

사례3은 가출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로 형사처벌받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사건이다.

위 사례들 모두 소송비용확정신청, 재산명시, 채권 추심 및 압류 명령 등 집행절차를 통해서 현실적인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1) 손해배상 (3건)

현실적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쉽사리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형사 등 법적조치를 하는 데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 가해자들은 이를 악용하여 피해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이번 사례들은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적인 응징은 물론 민사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지난 3년 동안 본 센터 또는 무료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총 5건이며, 이 중 본 내담자인 원고는 7명이다. 이는 한 피고로부터 여러 명의 피해자가 존재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공동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다. 모두 성매매피해자인 원고가 승소하였다. 아래는 그중 3건의 사례를 다뤘다.

판례 요약

사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가단538729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3. 13. 선고 2023나25437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

사실관계

피고는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원고(18세)와 만나 조건만남을 약속하였다. 피고는 약속대로 원고와 유사성고 1회, 성고 1회를 마친 후, 원고를 저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강간하였다. 피고는 범행 후 원고와 원래 약정하였던 1차 성행위의 댓가도 지급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원고는 불안, 우울, 무망감, 해리 증상 등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라는 병명의 질환을 앓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주문

○ 1심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5. 19.부터 2023. 1.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7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심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750조에 따라 피고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사례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9. 선고 2023가단5494983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

사실관계

피고는 채팅앱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고액의 조건 만남 비용을 지급하겠다. 큰 돈을 송금 하면 조사가 들어오니 거래기록에 필요한 150만 원을 먼저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에게 합계 97,276,1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주문

1. 피고는,
 - 가. 원고 A에게 4,9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13.부터,
 - 나. 원고 B에게 7,2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9.부터,
 - 다. 원고 C에게 73,151,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7.부터
 각 2023. 12.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사례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3가단5443626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

사실관계

피고는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원고들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원고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 각 돈에 대하여 2019. 10. 10.부터 2024. 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성매매를 유인·권유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판례 분석

check point

- **사례 1** 피고는 성매수자이며, 원고는 아동·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이다. 성매매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를 강간 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성인이 된 후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신청을 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가 고소할 당시(2019. 1.)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식하였다할 때,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2. 1. 경에는 손해배상 채권 시효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서는 증거 확보가 관건이었는데,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익이 없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으며, 항소심에서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된 기간(2022. 5.)부터 판단하여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의 시효소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이 소송을 기반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기 위해 재산명시, 소송비용액확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하였다.
- **사례 2** 피고는 총 16명의 성매매피해자와 고액의 조건만남을 요구한 후, 금전을 편취하였으며, 그중 3명의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였다. 각 피해 발생액에 비례하여 손해배상 청구액이 결정되었다.
- **사례 3** 피고는 갈 곳 없는 아동·청소년인 원고들을 유인하여 성매매하게 하였으며, 원고들이 성인이 된 후, 해당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후속지원으로 소송비용 환급액 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다.

소송대리인 Comment

대개의 성매매 피해 여성의 경우,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를 악용하는 범죄는 끊이지 않는다. 악질적인 가해자들은 피해 여성들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회유하고 협박을 한다. 업주,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욕설이나 폭행을 당하면서도 '돈을 못 갚는 내가 나쁜 거지' 하며 자책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성매매를 통해서 돈을 벌려다가 운이 나빠서 이상한 놈에게 걸린 것'이라며 그냥 지나가 버린다면, 가해자들은 여전히 유사 범죄를 죄의식 없이 반복할 수 있으며 본인은 물론 또 다른 피해 여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위 사례들에서 피해 여성들은 정말 큰 용기를 내어 도움을 구하였고,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는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덕분에 악질적인 범죄자를 처단하는 것을 넘어서, 금전적인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할 수 있었다. 형사적인 응징이 그치지 않고, 현실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는 큰 의미가 있다. 한편, 범죄행위의 시점이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법 논리 또한 주목할 만하다.

(2) 채무부존재확인 (2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다보면, 업주나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공증, 각서, 차용증 등 여러 문서를 작성하게 된다.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문서에 속박되어 벗어날 길 없는 늪에 허우적거리기 쉽다. 어렵게 돈을 모두 갚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어도, 혹시나 위 문서들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다. 하지만 성매매를 위한 선불금 등 여타의 명목으로 발생한 모든 채무는 무효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본 센터에서 진행한 채무부존재 사건은 2건이며, 성매매피해자인 원고가 모두 승소하였다.

판례 요약

사례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2가단108234 판결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사실관계 피고는 성매매 집결지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하고 일수를 했던 사람이다. 원고는 소개업자를 통하여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선불금 9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성매매 업소에서 하루 약 8~10명의 손님을 상대하였고, 원고가 받은 성매매 대금은 전액 모두 피고가 선불금 변제 명목으로 일수금을 수급해 갔다. 피고의 금원 거래는 영리를 목적으로 원고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이므로 성매매알선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에 해당되어 채무부존재 소를 제기하였다.

주문 1. 원고는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2016년 작성 증서 제79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13,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의 판단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사례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가단292709 판결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

사실관계

피고는 성매매 집결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성매매 알선자이다. 원고는 성매매 피해자로, 피고로부터 원고가 그 전 업소에서 지고 있던 빚에 상응하는 금원을 받아 변제 하였던 바, 피고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일할 것을 조건으로 제공된 금원이었다. 원고는 극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게 되었고 쌓여가는 채무는 면책결정을 받아 해결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상사시효 5년이 도과 되었기에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금원은 성매매를 할 것을 조건으로 제공된 것이어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이에 채무부존재 소를 제기하였다.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3,0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의 판단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례 분석

check point

- **사례 4** 성매매피해자인 원고는 피고의 채권이 불법원인급여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고와의 통화 녹취록, 선불금을 일부 변제한 내용이 적힌 일수장부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였다. 피고는 재판에 무대응하여 승소 하였다.
- **사례 5** 성매매피해자인 원고는 파산면책을 하여 채무를 면책받았으며, 소멸시효 도과되었고, 해당 채권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소송대리인 Comment

선불금, 차용금, 벌금, 각서, 일수 등 여타의 이름으로 붙여져 있는 문서들은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속아낸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막연히 '그때 무언가 써준 문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돈을 달라거나 경매하거나 협박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에 고통받는 분들이 적지 않다. 대법원은 성매매 관련된 채권들이 '불법원인급여'로서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일선 법원에서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물론 성매매 관련된 채권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은 필수적이다. 다만, 상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피고와의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동료들의 사실확인서, 원고 본인의 진술서, 일수 장부 등 간접 증거만으로도 인정해 준다. 특히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업주, 사채업자가 일시에 여성에게 거액을 빌려줬다는 것만으로도 선불금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용기 내시길 바란다.

업주나 사채업자들은 위와 같은 법리를 회피하고자 갖은 수단을 동원했지만, 성매매 관련 채권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증명된다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입장은 확고하다. 이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업주나 사채업자들이기에 채무부존재확인 소에 대응하지 않고 그대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3) 청구이의 (1건)

공정증서는 그 자체로 집행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만약 채무 변제를 완료했다면 그 즉시 공정증서 등을 회수해야 한다. 회수하지 못하면, 공정증서를 보관하고 있는 채권자는 아래 사례와 같이 재판절차 없이 곧바로 집행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무효인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을 한 경우 이를 정지시키고 무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청구이의의 소이다.

본 센터에서 진행한 청구이의 소송은 총 2건이며, 성매매피해자인 원고가 승소한 판결 1건의 사례를 담았다.

판례 요약

사례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단5127074 판결

사건명

청구이의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룸살롱에서 일하게 되며, 피고로부터 선불금조로 금 500만 원을 빌렸고, 공증을 하게 되었다. 피고가 운영하는 룸살롱에서 '2차(성매매)'가 당연한 전제로 운영이 되었는데, 원고 역시 피고의 알선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 상 금원은 다른 아닌 '선불금'적 성격의 금원이고, 피고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고용하거나 모집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성매매알선법 제10조, 민법 제103조 등에 의해 피고가 원고에게 갖는 채권은 무효임을 주장한다.

설령, 피고의 청구권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기에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2006년 제22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피고들의 상속지분 각 1/2에 관한 각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례 분석

check point

○ 사례 6 원고는 성매매피해자이며, 피고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는 원고에서 성매매를 전제로 선불금을 빌려주었다. 원고는 피고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나, 피고가 공정증서 원본을 빌미로 원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청구이의를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가 무대응하여 무변론 판결 승소하였다.

소송대리인 Comment

악질 업주나 사채업자의 경우 변제 완료된 채권이라도 가지고 있던 공정증서를 활용해서 성매매 피해 여성을 괴롭히며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개 업주들은 회유와 협박을 적절히 섞어가며 성매매 피해 여성을 조종하는 데 능숙하다. 어쩔 줄 몰라 하며 당장 두려움과 불안감에 일단 얼마라도 건네주거나 심한 경우 다시 업소에 복귀하려고 하는 분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악질적인 상황에서는 중심을 잡고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다시함께상담센터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업주들이 가장 두려워한다. 실제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회유와 협박을 일삼던 업주들은 센터 담당 선생님, 변호사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재판절차에 무대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4) 구상금 (1건)

공동불법행위자의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구상금 청구이다. 과연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성매수자의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책임 추궁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다만, 이 사건 구상금 청구는 성매매 피해 여성이 성매수자 배우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책임을 성매수자 또한 져야 한다는 취지이다.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책임을 묻는 절차가 구상금 청구이다.

이와 같이 성매매피해자인 원고가 성매수자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례가 1건이며, 일부승소하였다.

판례 요약

사례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지법원 2024. 10. 30. 선고 2024가소35395 판결

사건명

구상금

사실관계

피고는 김○○과 배우자 관계에 있는 자이다. 원고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중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시작하였다가 피고를 알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와 몇 차례 만나 성매매를 하였으나,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이러한 생활을 청산하고자 피고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고 알렸다. 피고는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만나자고 연락하며, 성관계 동영상도 빌미로 협박하여 조건만남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의 배우자가 피고가 원고와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발견하고,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 선고를 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었으나,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것은 원고뿐이며, 피고의 배우자에게 피고와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한 것인바, 피고에게 최소 50%의 부담 비율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에 구상권을 청구하였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55,8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31.부터 2024. 10.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배우자가 원고에게 청구한 손해배상비용은 원고의 부담 부분만을 산정한 위자료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인 원고가 자신의 출재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공동의 면책을 얻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판례 분석

check point

○ 사례 7 원고는 성매매피해자이고, 피고는 성매수자이다. 원고는 피고와 성매매 과정에서의 녹음 파일로 인하여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의 배우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바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도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에 대한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였다.

소송대리인 Comment

일회성인 성매매의 경우 성매수자의 혼인 여부는 물론 그 인적사항 등을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제 성매수자 배우자의 위자료 청구소송은 존재하기 어렵다. 다만 위 사례와 같이 지속적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매수자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이때에도 실제 혼인관계 파탄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 미쳤다면 그 책임의 범위는 얼마인지 등에 대한 법리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위 사례에서 성매수자의 협박 등에 의해서 성매매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면 성매수자 배우자의 성매매 피해 여성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기각될 수 있다. 백번을 양보해서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구매자의 책임이 훨씬 크다는 것은 일반 상식이라고 할 것이다. 법원에서 구체적인 사안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각 사안별로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꼼꼼히 챙겨봐 주기를 바란다.

2) 피소

(1) 대여금 (1건)

성매매피해자인 피고가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선불금을 받은 것을 빌미로 대여금 소송을 당하였으며,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는 선불금 채권으로 무효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 채, 2003년경 확정된 판결(전소) 그리고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2014년경 다시 한 판결(후소)의 관계에서 기판력이 문제되었다. 전소의 기판력을 바꿀 수 있는 전소에 대한 추완항소가 없었고, 후소에 대한 추완항소만 있었으므로 선불금 채권 여부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항소기각한 사례이다.

판례 요약

사례 1

(본안) 창원지방법원 2014. 2. 22. 선고 2013가단27841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나1111 판결

사건명

대여금

사실관계

피고는 성매매피해자이고, 원고는 피고가 일한 유흥업소의 상무로 일한 업소 관계자이다. 피고는 유흥업소에서 선불금을 받고 일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였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전소판결로 확정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례 분석

check point

○ 사례 1 피고는 유흥업소에서 선불금을 받고, 유흥업소의 상무인 원고와 사이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성매매하여 그 대가로 얻은 수입으로 변제할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가 패소하였다.

소송대리인 Comment

2003년 이전에 선불금 채권이 발생하였고, 2003년경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소멸시효 10년 경과하기 전인 2013년경 다시 판결은 확정되었다. 하지만 피고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2021년경이었고, 곧바로 추완항소를 하였으나 2023년경 항소기각되었다.

20년 동안 있는지도 몰랐던 채권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어떠했을지 아쉬움이 남는다. 기판력의 법리를 기계적·형식적으로만 판단한 법원에 대한 답답함도 있다. 혹시라도 본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채권이 있을 수 있으니, 법원으로부터 오는 우편물 등을 잘 수령하고, 혹시 문제가 생겼다면 가능한 바로 상담을 요청하여 도움받기를 바란다.

(2) 보증채무금 (1건)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업주가 다른 성매매 여성의 채무를 성매매피해자에게 연대보증하게 한 사례로 1심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성매매피해자인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판례 요약

사례 2

(본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3. 20. 선고 2012가단513578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2나44462 판결

사건명

보증채무금

사실관계

피고는 성매매피해자이고, 원고는 성매매 업주의 자녀이다.[성매매 업주가 사망하여 자녀가 원고의 재산을 단독 상속받았으며, 원고는 승계인수인에게 보증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채무자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성매매 업주가 운영하던 업소에서 원채무자인 타 성매매 여성이 성매매를 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선불금을 대여하였다. 성매매 업주가 피고에게 원채무자의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연대보증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며, 원고와 승계인수인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사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승계인수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인수인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1.부터 2007. 6. 29. 까지는 연 4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성매매 업주가 선불금 명목으로 여종업원들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채무자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판례 분석

check point

○ 사례 2 피고는, 성매매 업주가 원채무자가 성매매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선불금을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이에서 체결된 대여약정이나 연대보증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원채무자의 채무 변제기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대리인 Comment

안타까운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원래 채권자는 이미 사망하였고, 원래 채무자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보인다. 결국 원래 채권, 채무자는 없다. 이 사건 법정에는 오직 채권자의 상속인과 채무자의 연대보증인 피고만이 있을 뿐이다. 법원에서는 채권, 채무자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불금 채권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만약 원채무자를 찾을 수 있었다면 어땠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원채무자의 진술 등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성매매 등을 조건으로 하는 선불금 채권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지 않았을지 안타까움이 있다.

하지만 원채무자의 진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래 채권자가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 또한 종업원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각 종업원들끼리 상호 연대 보증 형식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악덕 업주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채권은 선불금 채권으로 보아야만 한다고 여겨진다. 원래 채무자가 성매매를 조건으로 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손해배상 (1건)

성매수자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된 사례로, 법원은 본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였고, 이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었다.

판례 요약

사례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2. 23. 결정 2022머85831(2022가소11546) 조정

사건명

손해배상(기)

사실관계

성매매피해자인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성매매 업소를 통해 만났다. 원고의 배우자는 피고를 찾아와 성매매 업소 외에서도 만나자고 요구하여 만나게 되었다. 어느 날 원고의 배우자가 '배우자가 다 알아 버렸다'라며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고, 원고와 통화하며 사과하였고, 원고의 배우자와 만나지 않았다. 그 이후 원고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게 되었다.

조정조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2023. 3. 31.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에게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만일 피고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게 위약금으로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을 지급한다.
 - 가. 사적으로 만나는 행위
 - 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기타 일체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
3.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이 사건 청구원인과 관련된 구상금 청구 등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4. 원고는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조정결정을 내렸다.

판례 분석

check point

○ 사례 3 원고는 성매수자의 배우자이고, 원고의 배우자는 피고에게 성관계를 전제로 생활비를 지급하여 성매매하였다.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를 빌미로 손해배상청구 되었으며, 법원에서 조정 회부하였으며, 원고의 청구금원에서 일부 조정된 금원으로 채무가 조정되었다.

소송대리인 Comment

일회성 성매매의 경우 성매수자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당하는 경우가 드물다. 성매매 피해 여성의 경우 성매수자의 혼인 여부를 알 수도 없으며, 혼인파탄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특정 성매수자와 지속적인 만남을 갖는 경우 성매수자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다. 따로 카톡이나 전화 연락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확률이 더 높아진다. 성매매 피해 여성의 경우 관계 단절을 하고자 하지만, 그럴수록 특정 성매수자의 집착이 심해지며 때로는 협박을 때로는 달콤한 회유 등을 하기도 하며 관계를 지속하려고 한다. 이 사례에서도 성매수자의 집착 등으로 힘들어하며 관계 단절을 여러 차례 시도 하였다.

이러한 점 등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박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성매매 피해 여성은 이 기회에 성매수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단절하기를 원하였고, 같은 여자로서 원고 입장을 고려하고 싶다는 취지로 조정을 원하였다. 무엇보다도 탈성매매에 대한 의지가 강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 하였다.

모든 사건에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성매매 피해 여성이다.

IV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1 성매매 상황 속에서의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173
2 관련 법률	175
3 기본개념과 절차	178
1) 파산 및 면책	178
2) 개인회생	180
3) 기타 기억할 만한 절차	182
4 관련 사례	184

IV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1 성매매 상황에서의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투모로법무사 합동서초사무소, 법무사 서선진

판례집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몇 년간 진행했던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들을 다시 차분히 살펴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사건 기록 곳곳에서 떠오른 내담자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내가 그들과 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삶의 끈을 놓지 않고 회생이나 파산이라는 마지막 관문까지 스스로 걸어 들어올 수 있었을까?' 그 질문 앞에서 순간 나도 모르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차마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만약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어쩌면 나는 중간도 가보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졌을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스스로의 의지로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와 내 앞에 마주하고 있는 것 만으로도 내담자들은 큰 용기를 보여준 것이고, 그 용기만으로도 충분히 큰 박수와 지지 그리고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반적으로 다중채무자라고 해서 누구나 사회적 약자로 규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내담자들은 그와는 전혀 다른 현실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들이 처한 환경과 채무가 얽혀 있는 구조적 배경을 들여다보면, 그 무게는 결코 개인이 짊어질 짐이 아니다. 오히려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품어야 할 문제임을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된다. 채무의 원인이 성매매 산업 안에서 만들어진 강압과 착취의 결과임에도, 여전히 일부 시선은 이들을 온전히 피해자로 바라보기를 주저한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로만 바라보거나, 그들의 선택을 개인의 일탈 처럼 오해하는 시각 역시 여전하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함께상담센터와 그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률지원단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담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자리에서, 그 목소리를 대신하여 전달하고 지켜내는 역할을 우리가 맡고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그 역할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만큼 크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출발선에 우리가 함께 서 있다는 사실이 그 무게를 견디게 할 때도 있다. 내담자들의 용기와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이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 곁을 지키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보람을 찾기도 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그저 채무를 정리하는 법적 절차 중 하나로만 보여질지 모른다. 하지만 성매매 상황 속에서 억압적이고 불법적인 구조에 갇혀 살아온 여성들에게는 이 절차가 삶의 전환점이 되고 새로운 길을

여는 첫 번째 관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문을 두드릴 힘조차 잃어버린 이들이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곁에서 용기를 주고 함께 버텨주는 일, 그것이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이자 과거의 사건을 열어보면서 이 판례집을 정리하게 된 이유일 것이다.

이번 기록이 앞으로의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회생파산과 관련한 실무와 지원 활동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여전히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든 내담자분들에게 이 글을 빌어 진심 어린 응원을 전하고 싶다. 그들이 스스로 걸어 나온 이 길의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 우리 역시 오늘의 기록을 남기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

2 관련 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약칭: 채무자회생법]

< 파산제도와 관련하여 >

제564조(면책허가)

-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제651조·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 5의2.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 ② 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약칭: 채무자회생법]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개인회생제도와 관련하여 >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 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제615조(변제계획인가의 효력)

- ① 변제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을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변제계획에 의한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아니한다.
- ②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다만, 변제 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4조(면책결정)

-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2.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3.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약칭: 채무자회생법]

- ④ 법원은 면책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 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기본개념과 절차

1) 파산 및 면책

(1) 개인파산 및 면책의 개념

채무자 자신의 능력 및 재산으로 채무를 계속적, 일반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지급불능 상태를 재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파산선고이다(파산의 재판). 그리고 파산선고를 받은 자만이 '파산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며, 파산자의 신분에서 면책신청의 자격을 얻게 되어 채무를 면책받는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책의 재판). 결국 개인은 파산의 재판과 면책의 재판 두 종류의 재판과정을 통해 종국의 목적인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면책의 의미는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이다. 즉, 면책된 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권이 상실되어 채무자는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개인파산 및 면책의 절차

- ① 파산신청서 제출(면책 신청과 동시제출) ▼
- ② 파산선고 결정 ▼
- ③ 파산관재인 선임 ▼
- ④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 ▼
- ⑤ 면책신청에 대한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지정 ▼
- ⑥ 채권자집회일 · 파산폐지에 대한 의견청취기일 지정 ▼
- ⑦ 면책불허가사유 조사 ▼
- ⑧ 파산관재인 임무종료에 따른 보고서(면책불허가사유 유무 조사) 제출 ▼
- ⑨ 파산폐지결정 및 공고 ▼
- ⑩ 면책허가결정 및 공고 ▼
- ⑪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 확정 통보 ▼

㉠ 파산 신청서의 제출(동시제출)

파산재판과 면책재판은 별개의 재판이다. 다만,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고자 하는 목적은 결국 면책을 받기 위함이므로 법원은 파산과 면책 신청서의 동시 제출을 받도록 하여 부득이 면책신청을 놓치게 되는 일을 방지하고 있다.

㉡ 파산선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임을 확인하는 파산선고는 선고 전 심문기일을 열 수 있으나, 임의적인 절차이고 통상 생략되므로 출석하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파산선고일에는 반드시 채무자가 출석하도록 하고 있다. 파산선고 시에는 파산의 효과와 앞으로 일어나게 될 파산절차를 안내하는 정도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파산 관재인의 선임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근래에는 오히려 파산관재인의 선임이 일반적이고 예외적으로 선임하지 않고 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갖게 되고,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공정하게 환가·배당하고 법원에 조사한 내용을 보고하는 업무를 한다. 조사 과정에서 면책불허가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그 의견을 보고하게 된다.

㉣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

내담자들의 경우 파산재단²²⁾을 형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내담자들의 경우 파산관재인의 업무 중 채권신고를 받고 조사하는 과정, 배당절차의 과정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종종 보험금, 차량 등이 과도한 금액으로 평가되어 파산재단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면제재산 신청을 통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다.

㉤ 면책신청에 대한 채권자 이의 기간의 지정

채권자들에 대한 통지는 채권자들의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고, 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의의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면책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나 불허가사유를 발견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 채권자집회일 · 파산폐지에 대한 의견청취기일 지정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채무를 면책받고자 함과 면책 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린다. 더불어 이의신청기간을 알려서 채무자에 대한 이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

이때 채권자에게는 면책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사유, 재판에 참고할 만한 사실 등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하게 하여 파산관재인의 조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내용이 채권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채권자의 절차 참여권이 침해되고, 채권자가 면책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에게 송달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22) 파산재단의 의미 :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지는 모든 재산. 파산관재인은 이것을 환산하여 재단채권의 변제 및 파산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한다.

내담자들의 경우, 파산 당시에 가진 재산으로는 통장 잔고 약간, 소액의 보증금, 보험해약환급금, 차량 정도의 재산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재산은 압류금지의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민사집행법상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결국 파산관재인이 환가하여 배당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정 금액(6개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 등)은 면제재산 신청을 통해 파산재단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㉑ 면책불허가사유 조사(간략)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채무자가 과도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를 한 행위를 포함)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㉒ 파산관재인 임무종료에 따른 보고서(면책불허가사유 유무 조사 포함) 제출

㉑ 파산폐지결정 및 공고

내담자 대부분이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채권조사 및 채권조사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배당절차도 없이 파산절차를 종료하게 된다. 이를 '파산폐지'라고 하는데, 종종 파산을 면책으로 생각하고 면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파산절차를 마무리하는 정상적인 과정이므로 오해가 없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

㉒ 면책허가결정 및 공고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경우,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권리면책). 면책허가결정으로 채무 전부에 대한 책임이 조건없이 면제되고, 채권자는 법률상 강제집행 등 법률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㉓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 확정 통보

한국신용정보원에 법원이 면책사실을 통지해 줌으로써 개별 채무 내역은 삭제되고, 다만 특수기록으로 파산 사건의 기록이 일정기간 동안 남게 된다.

2) 개인회생

(1) 개인회생 개념과 의의

개인회생절차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채무자가 3년 내지 5년의 기간 동안(변제기간),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총 채무액 중 변제되지 아니한 잔액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하여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있어야 하고, 채무액은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만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2) 개인회생의 절차

- ① 개인회생개시신청서 제출(변제계획안 제출) ▼
- ② 회생위원 선임 ▼
- ③ 보전처분(금지명령, 중지명령) ▼
- ④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 ⑤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이의기간지정 ▼
- ⑥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
- ⑦ 변제계획 인가 ▼
- ⑧ 변제계획 수행(회생위원 감독) ▼
- ⑨ 면책허가결정 ▼
- ⑩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 확정 통보 ▼

① 개인회생개시신청서 제출(변제계획안 제출)

개시신청서에는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절차 진행중에 발생할 수 있는 채권자의 집행행위를 막기 위해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접수하게 된다.

② 회생위원 선임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 상의 채무, 재산,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변제계획안의 적정성에 대하여 조사하고 변제 수행 가능성을 조사하는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보정권고를 통해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조사하는 경우가 많고,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③ 보전처분(금지명령, 중지명령)

접수 후 통상 1주일 이내에 결정되어 채권자의 소송행위 이외의 보전처분 및 집행행위와 변제의 요구 등을 저지하는 효력을 있어, 안정적으로 소득활동을 하면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④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채무자의 서류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짓고 제출된 변제계획안을 채권자들에게 통보해 줌으로써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

⑤⑥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이의기간지정 및 채권자집회

채권자들은 개시결정의 송달을 통해 채무자가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의 채무를 변제계획에 따라 수행할 것인지 지를 인지하게 되고, 채권자 이의기간을 지정해 줌으로써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법률상 채권자에게는 개시결정에 대한 동의권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㉞ 변제계획 인가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고, 채권자에 대한 공정과 형평에 맞으며 그 수행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변제계획안을 확정짓게 된다. 그리고 채무자는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수행해 나가게 된다. 개인회생절차는 인가 시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치게 되고, 인가 이후 채권자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인가 전 채권자를 빠짐없이 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㉟ 변제계획 수행(회생위원 감독)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는 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좌에 변제금액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간다.

㊱ 변책허가결정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 확정 통보

변제계획대로 변제수행을 완료한 후 채무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나머지 변제하지 않은 채무에 대한 면책을 결정한다. 면책결정에 대하여는 파산에 따른 면책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의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3) 기타 기억할 만한 절차

(1) 면제재산결정의 신청

채무자가 파산 선고시 가진 재산으로서 원래 파산재단에 속하여야 하나, 법원의 결정으로 자유재산으로 변경된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개인회생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하게 된다). 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청산하여 배당할 재원에서 제외하는 효과로서 의미가 있고,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를 낮추어서 변제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청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일정액²³⁾

㉡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

(2) 사실조회촉탁신청 등의 이해

내담자의 경우 사채(개인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채권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최소한 정확한 성명과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채권자에 대한 파산신고 또는 개시결정의 통지를 위해서

채권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여 사실조회신청,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 과세정보 제출명령신청을 활용하게 된다. 그러면 해당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채권자에 대한 송달 절차를 진행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알고 있는 채권자의 정보를 정리해 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송금한 은행명, 계좌번호, 핸드폰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형사사건의 사건번호, 업소명, 업소의 주소 등 알고있는 채권자 정보를 취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주택가격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서울특별시의 경우 5천 5백만원)

4 관련 사례

센터를 통해 파산면책을 진행한 내담자는 8명, 개인회생을 진행한 내담자는 2명이다. 아래 파산·면책 사례 7건을 소개하였다.

사례 요약 및 시사점

사례 1

업소의 선불금 빚과 다른 여성의 연대보증 빚으로 채무가 불어난 사례

사례요약

초등학교 졸업 학력으로 일을 구하기 어려워 친구의 소개로 유흥업소에 유입되어 성매매 하게 되었다. 유흥업소 내 여성들의 선불금에 연대보증을 서게 되며, 모든 빚을 떠안게 되는 상황에서 업소 단속으로 센터로 상담위탁을 받게 되며 빚의 규모를 확인하게 되었다.

법무사 Comment

금융기관 채권자는 단 한 건도 없고, 오로지 개인채권자만 16명이 있었던 사안이다. 파산 및 면책신청의 접수 시점이 2022년도인데, 사건의 발생시점은 200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최종적으로는 2019년까지 발생한 채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개인채권자들은 일단 부채증명서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상담원은 내담자와 함께 채무 발생 당시의 공정증서의 작성사실 확인 및 추적, 법원의 코트넷망 자료를 조회하여 소송진행내역 확인(송무가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패소한 소송 또는 집행도 많이 발생함.), 그리고 해당 서류(공정증서, 판결문, 압류추심결정문 등)의 발급을 통해 채권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물론 이렇게 확보한 인적사항에도 변동이 발생하여 송달의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추적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본 사례는 채권자 추적 중에 채권자 중 한 명이 사망한 사실도 발견되었다. 그렇다고 채권자가 없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해서는 안 된다. 채권이 상속인에게 상속된 것이므로 채권자의 상속인까지 모두 파악해야 했고, 채권자를 상속인들로 변경해 주었던 사례이다.

맞보증 관계(예를 들면, A의 채무에 B가 보증인으로, B의 채무에는 A를 보증인으로 넣고 계약하는 대출의 형태)도 확인이 되었는데,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도 결국은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있는 자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에 서게 되므로 반드시 채권자목록에 누락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부분이다.

내담자는 오랫동안 개인채권자들로부터 변제의 압박으로 고통받아 왔으나, 파산 및 면책 절차 내에서는 어떠한 개인채권자들의 이의도 없이 면책결정이 잘 마무리되었다.

사례 2

일수업자가 업소 선불금, 일수 등 빚을 갚으라고 가족도 협박한 사례

사례요약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수익을 벌 수 있다는 광고글을 보고 성매매 업소에 유입되었다. 선불금을 갚기 위해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거나 일수를 받아 빚이 쌓여갔다. 업소 사람들, 일수업자들이 집에 찾아와 부모님을 협박하고, 가전제품들을 가져가기도 하였다. 내담자의 빚으로 인해 가족들이 피해를 받게 될 것이 두려워 파산·면책을 진행하였다.

법무사 Comment

금융기관 4건, 렌탈료 1건, 통신료 1건, 개인채권자 19건의 채무를 면책받기 위해 절차가 시작되었다. 앞선 사례에서는 공정증서와 판결문 등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은 사건이었던 것과 달리 본 사건은 오랜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업주, 일수업자 등)의 주소나 이름조차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사안이었다.

해당 채권자와의 금융거래 자료를 분석하여 거래한 당사자명, 계좌번호를 특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한다. 법원이 해당 금융기관에 정보제공을 명령하면 금융기관은 요청된 채권자의 정보를 법원에 통보해 준다. 법원에 통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주소보정요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채권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서 다시 채권자에 대한 송달을 위한 추적이 시작된다.

계좌번호도 없이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 채권자도 있었다. 전화번호를 알아도 통신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1개의 채권자 추적을 위해 3곳의 통신사에 각각 총 3건의 사실조회촉탁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3곳으로부터 회신을 받아 정보가 제공된 한 곳의 자료를 바탕으로 위 절차와 마찬가지로 채권자 추적이 시작된다.

업소에서 일하던 영업직과의 관계에서 발행한 채무도 하나 있었다. 금융거래가 없었고, 전화번호도 본인명의로 아닌지 전혀 추적이 되지 않았다. 내담자는 그 사람이 일하는 업소를 알았기 때문에 해당 주소지로 계속 우편을 발송했으나 받지 않았다. 결국 주소지 앞까지 상담사 선생님과 찾아가서 사진을 찍어 법원에 제출했고, 고의적으로 반송하거나 업소를 옮긴 것으로 보이지만, 더 이상 추적할 방법이 없음을 호소하여 송달되지 않는 채권자에 대한 공고같은신청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해당 채권자에 대하여는 송달 없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오랜 추적 끝에도 송달이 되지 않거나 송달주소를 도저히 밝힐 수 없었던 채권자가 4명이나 되었는데 모두 위와 같은 최선의 노력을 보임으로써 법원의 공고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면책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사례 3

오래전 업소에서 빌린 돈으로 채무 독촉을 하여 일상이 무너진 사례

사례요약

대학교에 다니면서 부담해야 하는 돈을 벌기 위해 선불금을 받고 유흥업소에 들어갔다. 업소를 다니면서 선불금과 사채 이자가 늘어났고, 술과 2차 성매매를 강요당하며 몸이 망가졌다. 성매매지원시설에 입소하여 자립하며 취업하고 결혼하였으나, 오래전 업소에서 돈을 빌린 사채업자가 찾아와 채무독촉을 하여 이혼하게 되었다. 우울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취업이 어려워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평범한 일상 회복을 위해 파산·면책을 진행하였다.

법무사 Comment

내담자는 이미 업소를 그만두고 웨딩 플래너, 방문판매 화장품회사를 다니는 등 탈 성매매를 위한 많은 노력을 시도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6년 이상 지난 시점에 룸살롱 실장이었던 자로부터 소 제기가 있었던 사실과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아마도 자신이 벗어났다고 생각한 굴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내담자들은 독촉을 피하고, 채권자가 찾아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주소지를 스스로 관리가 되지 않는 곳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당장의 두려움을 피할 수는 있고 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발생한 소송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고, 감당해야 할 법적 조치들이 남겨질 수 있다.

무섭게 추적해 오던 채권자였기 때문에 송달 등에 대한 두려움, 다시 자신이 노출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컸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공고같은 결정을 통해 면책을 잘 마무리 지었던 사건이다.

사례 4

가족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유입되었다가 채무가 불어난 사례

사례요약

부모님이 이혼하고 부친의 사망으로, 가장이 되었으나 생활고에 시달리다 성매매하게 되었다. 10여 년 동안 유흥업소 및 성매매 집결지를 이동하며 선불금, 연대보증, 일수로 채무가 불어난 사례이다.

법무사 Comment

생활고, 어린 나이에 의지할 곳 없이 스스로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고, 업소를 전전하면서 말도 안 되는 업소 빚과 맞보증, 선불금, 공정증서 작성에 따른 채무가 계속 부풀려졌다. 하나 하나 따져본다면 모두 민사상의 불법 원인급여임이 명백하므로 그 무효를 주장하여 채무부존재확인 소나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하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안의 수가 많다면, 각각의 채권자를 상대로 하나씩 깨나가는 방법보다는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채무로 인정하고 파산 및 면책 절차를 통해 전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이 채무자가 일거에 자신의 채무를 해결한다는 측면, 소송경제의 측면, 시간적 측면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이 사례가 그러한 판단 하에 그간 발생한 채무를 모두 인정하고, 파산 및 면책으로 억울한 채무를 한 번에 면책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사례 5

소개업자로부터 속아 돈을 주다가 채무가 불어난 사례

사례요약

성매매 업소에서 단속이 되어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 또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돈을 벌고자 이동한 지역에서 만난 소개업자가 법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수차례 돈을 요구하였다. 소개업자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은행권 대출, 대부업체 등을 통하여 돈을 빌려 빚을 지게 된 사례이다.

법무사 Comment

업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해도 주변에 도움을 받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보니, 자신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다시 2차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 안타깝다. 이 사례도 벌금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계속 특정인에게 편취 당하면서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은 상대방을 형사 고소하였으나 돈을 돌려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특정인에게 지속하여 자신의 형성한 재산(현금)이나 대출받은 금액을 목돈으로 이체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법원 입장에서는 이 돈이 피해를 본 금액인지, 아니면 특정인을 이용하여 빼돌리고 파산면책을 받겠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통해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형사고소하는 방법을 통해 자신이 피해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파산 면책 절차에서 조금은 수월하게 채권 회수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임을 입증하기 좋은 수단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을 것이다.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처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주 소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서울여성플라자 4층

연락처 02-814-3660

* 본 제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에 있습니다.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